

2004년 1월 1일부터

경제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3. 12.

재 정 경 제 부

< 目 次 >

I. 변경되는 주요이슈

1. 경 제 일 반

-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 8
- (2)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확대 / 8
- (3) 기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관리를 강화 / 9
- (4)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 / 9
- (5) 회계제도를 선진화 / 10
- (6) 「소비자 안전센터」를 설치·운영 / 10
- (7) 여성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 / 11

2. 경 쟁 촉 진

- (8) 선진국형 지주회사제도를 도입 / 11
- (9) 기업결합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12
- (10)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개선 / 12
- (1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차단을 강화 / 13

(12)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서비스의 질을 제고 / 13

(13)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활성화 / 14

3. 세 제

(14)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 / 14

(15)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 / 15

(16)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 / 15

(17) 농어민·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 16

(18)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 / 16

(19)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신설 / 17

(20) 세제관련 기타 주요 개정사항 / 17

4. 과학기술·산업·에너지

(21)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제도를 개선 / 18

(22)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충 / 18

- (23)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를 신설 / 19
- (24)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 / 19
- (25)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 / 20
- (26) 벤처기업 M&A 활성화대책 시행 / 20
- (27) 벤처기업의 질적수준을 고도화 / 21
- (28) 특허수수료 체계가 쉽고 간단하게 개편 / 22

5. 농 립 어 업

- (29) 쌀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개편 / 22
- (30)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감면 / 23
- (31) 농어업인의 영유아에게도 양육비를 지원 / 23
- (32) 시·군별로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추곡수매 / 24
- (33)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상한을 확대 / 24
- (34) 축산업등록제 도입 / 25
- (35)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농업지원대책 / 25
- (36) 숲가꾸기를 원하는 산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감리제도를 도입 / 26

- (37) 국민참여형 국유림 서비스제도 도입 / 26
- (38)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에 대비한 정책보험 도입 / 27

6. 정 보 · 통 신

- (39)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제도를 신설 / 28
- (40)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확대시행 / 28
- (41)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 29
- (42)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 시행 / 29
- (43)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서비스 실시 / 30
- (44) 디지털 TV방송을 도청소재지 지역으로 확대 실시 / 30
- (45) 에스크로(escrow)서비스 시행 / 31
- (46) 모바일을 통한 우편번호 검색서비스를 제공 / 31
- (47) 전자우편 제작 환경을 개선 / 31

7. 의 료 · 복 지

- (48)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을 확대 / 32
- (49)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저렴한 비용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 32

- (5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32
- (51)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수준을 인상 / 33
- (52)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강화 / 33
- (53)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 34
- (54) 희귀·난치성질환 3종을 추가 지정하여 저소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 34
- (55)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 / 34
- (56) 암 조기 검진사업의 확대 및 지역단위 지역암센터 설치 / 35
- (57)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를 개선 / 35
- (58)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에게 보험급여를 적용 / 35

8. 환 경

- (59)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36
- (60)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 / 36
- (6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 36
- (6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37

- (63) 먹는 물 관리를 강화 / 37
- (64) 폐기물 재활용제도를 강화 / 38

9. 근 로 여 건

- (65) 지속성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 38
- (66)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제도를 신설 시행 / 39
- (67)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신설 / 39
- (68) 주5일 근무제 도입 / 40
- (69)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 40
- (70) 작업환경 측정 대상과 횟수제도 개정 / 41

10. 주 거 생 활 · 교 통

- (71)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장기 주택금융제도를 도입 / 42
- (72)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법을 전면 개편·시행 / 42
- (73) 첨단 교통시대를 알리는 고속철도 개통 / 43

II. 부처별 신·구 제도와 법규 대비표

1. 재정경제부 / 46
 - 국세청 / 63
 - 관세청 / 64
 - 조달청 / 70
2. 기획예산처 / 71
3. 공정거래위원회 / 72
4. 금융감독위원회 / 76
5. 과학기술부 / 78
6. 농림부 / 79
 - 농촌진흥청 / 95
 - 산림청 / 96
7. 산업자원부 / 102
 - 중소기업청 / 105
 - 특허청 / 106
8. 정보통신부 / 108
9. 보건복지부 / 110
10. 환경부 / 119
11. 노동부 / 126
12. 건설교통부 / 133
13. 해양수산부 / 139
14. 문화관광부 / 141
15. 여성부 / 144

변경되는 주요이슈

1. 경 제 일 반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기획예산처 사회재정1과 (3480-7736)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지역혁신사업계정' 과 '지역개발사업
계정' 으로 구분 운용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5.1.1부터 시행

■ 지역사업 예산이 지역 의사를 존중하여 지원되도록 재정시스템을 개편하였
습니다.

- 각 부처가 다수의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통해 개별·분산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지원

* '05년 예산을 편성하는 '04년부터 적용

- 지역혁신발전계획 등 지역 스스로 만드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전략적·체계적인 자원배분 유도

* '04년 상반기중 각 부처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자체의 지역
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의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의 특성·우선순위를
중점 반영한 지역발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05년부터 매년 5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 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세, 과밀부담금,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세입 재원을 확보

- 지방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기본인프라를
확충·개선하기 위한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2)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확대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 (3496-5047)

■ 재정 성과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22개 선시행부처의 재정사업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개발범위를 '03년 재
정사업의 30% 수준에서 '04년말까지는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

- 나머지 행정부처는 '03년도에 재정사업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성과목표·성과지표 개발 착수

■ 22개 부처의 성과계획서가 처음으로 작성됩니다.

- 성과계획서에는 재정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목표치를 예산과 함께 제시

- 국가정책의 고객인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가예산의 책정과 집행을 평가함
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

(3) 기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관리를 강화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 (3480-7971)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기금정책심의회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매 3년마다 기금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기금존치 여부에 대한 첫번째 평가는 '04년에 실시
- 금융성 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 금융성기금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4개 기금을 정비하였습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자금으로 전환
 - '03년부터 일반회계로 사업을 이관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과 '01년 8월부터 사실상 운용이 중단된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을 폐지
 -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1.1부터 시행

(4)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 (3480-7971)

-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과기준이 불명확한 8개 부담금을 정비하였습니다.
 -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등 7개 부담금을 폐지
 - *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소하천원상회복예치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수자원원인자부담금, 보안립수익자부담금,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분담금, 전기사업자부담금
 -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운용하는 산업단지 공동부담금은 부담금관리대상에서 제외
- 성격상 부담금에 부합함에도 부담금관리대상에 누락되어 왔던 6개 부담금을 새로 부담금관리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추후 효율을 인상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할 경우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
 - * 기반시설부담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산지복구하자보수보증금, 사방사업 원인자부담금, 사방사업 이용자부담금,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1.1부터 시행

(5) 회계제도를 선진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와 (503-9263)

- 2004년 4월 1일부터 기업의 회계와 경영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과 시장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인증을 통해 공시서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
 - 거래소·코스닥 기업의 경우 임원, 주요 주주 등에 대해 금전대여, 담보 제공, 지급보증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 거래소·코스닥 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주기적(6년)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회계투명성이 담보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
 -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모회사와의 관계상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해외 적격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수를 1/2 이상에서 과반 수 이상으로 강화
- 2003년 12월 11일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수습제도를 개선하여 실무수습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다만,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어야 함

- 거래소·코스닥 기업의 경우 2004년 4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분기별 배당제(현행은 결산과 반기 배당만 가능)가 도입됩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당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기업도 배당을 활성화하여 주주중시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6)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운영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 2004년 1월 1일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경고활동이 강화됩니다.
 - 소비자안전센터는 일상생활에서 소비·사용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위해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경고(소비자 안전 경보)하는 업무를 수행
 - 동 센터는 위해정보 보고기관(57개 소방서·병원), 소비자안전넷(<http://safe.cpb.or.kr>), 무료전화(080-900-3500) 등을 통해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석한 후 위해정보평가위원회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여부 등을 결정
 - 한편 동 센터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사진·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

- 이러한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위해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한 안전사고 확산을 차단하는 등 소비생활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7) 여성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

여성부 정책2담당관실 (3703-2542)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여 여성직업 훈련의 질을 제고합니다.

※ 2004년도 예산 : 71억 3천만원(국회 심의중)

-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대출재원 : 100억원)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3년 이내(종전 1년 이내)
-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

-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대출(대출재원 : 30억원)

2. 경쟁 촉진

(8) 선진국형 지주회사제도를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503-9122)

-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100% 미만, 자회사지분율이 50%(상장자회사는 30%)이상이어야 함

- 현재 일부 설립·전환 유형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유예기간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

* 현행 현물출자,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가액 증가 등 주식취득, 주식교환·이전방식 등도 포함

- 지주회사가 더욱 투명하게 바뀝니다.

-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여 지주회사의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하고,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

-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신설하여 자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

* 신설 지분율 요건 : 비상장 손자회사 50% 이상, 상장 손자회사 30% 이상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4.1일 시행

(9) 기업결합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503-1934)

-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입니다.
 -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
 - * 구체적인 규모는 시행령 개정시 확정할 예정임
 - 계열회사간에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기업결합의 실제적 심사는 더욱 강화됩니다.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가 주식취득에 의해 기업결합을 할 경우 현재에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완료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 1차 신고후 주식의 적극적 취득에 의해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하여야 함
 - * 1차 신고시 의도적으로 2대주주가 되도록 지분을 조정·신고하여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후 지배지분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
 - 독과점 형성의 우려가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건에 대하여는 최장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4.1일 시행

(10)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를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1담당관실 (504-5142)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 쉬워집니다.
 - 그동안 공정거래법상의 재판상 주장 제한조항(제57조①)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다는 오해가 있어 이 규정을 삭제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에 곤란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어 법원이 관련증거와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됨
 - * 원고의 손해액 입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발생은 입증되었으나 정확한 금액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다 용이하게 금액을 확정하는 효과
 - 피고의 무과실 책임이 고의·과실의 추정으로 바뀜
 - * (현행) 피고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 → 피고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 면제
 -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4.1일 시행

(1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차단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504-4163)

-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폭 높였습니다.
 - 종전 최고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상향 조정
- 과징금 부과한도를 높여 담합을 더욱 철저히 억제합니다.
 - 현행 과징금 부과한도(관련 매출액의 5%, 10억원)로는 담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을 억제하는 데 미흡하여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
- 신고자와 조사협조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 조사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면대상에 포함
 -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통과시 2004.4.1일 시행

(12)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서비스의 질을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1담당관실 (504-5142)

- 신고사건 진행상황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그동안 신고접수 사실과 중간회신 등을 우편으로 통지해 왔으나, 신고인 들의 궁금증 해소에는 크게 미흡하여 이를 개선
 - 앞으로 자기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진행 상황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나의 사건검색')에서 실시간으로 검색 가능
- 심판정 출석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였습니다.
 - 당사자의 심판정 출석시간을 안전별로 시간대를 달리 편성(시차제)하여 예고된 시간에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
- 심의 속개제도를 도입하여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현행 '회 심리' 방식을 보완하여 심의기회가 추가로 주어지는 '심의속개 제도'를 도입
 - 쟁점이 많은 안건의 경우 피심인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고, 위원회도 신중한 심의를 기하도록 하기 위함

(13)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503-8894)

-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원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의 이행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 현재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공포후 3개월 경과후 시행

3. 세 제

(14)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 27%는 25%로, 1억원 이하분은 15%에서 13%로 각각 인하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03.7.1~'04.6.30. 기간동안 이루어진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업이 '03.7.1.~'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기존 내용연수의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감가상각 기간을 가감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503-9214), 국제조세과 (503-9228)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 17%를 적용하는 방법과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234)

-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03년에 이어 '04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관세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무세화 품목(17개) : 철광석 · 나프타 등(기본세율: 1~2%, 할당세율: 0%)
 -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 0%)
- 한·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였습니다.
 - 농축수산업 지원 : 사료용 완두콩, 브라인 슈림프 알 등
 - 중소기업 소요물품 : 주물용 코크스 등 4개 품목

(17) 농어민·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DDA협상,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농특세 적용시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
-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소득의 범위에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전통주 제조 수입을 추가하여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

■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근로소득공제〉
급여500~1500만원 구간 : 소득공제율 47.5% → 50%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이하 : 세액공제율 50% → 55%,
공제한도 45만원 → 50만원
-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는 한편,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에 대하여는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 제도를 신설

-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받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신설

(18)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2110-2321)

- 토지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앞당겨('06년 → '05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 * 단, '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 없이 양도만 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
- 투기지역내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종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 개인 부동산매매업종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19)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신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503-9228)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를 처음 3년간에는 100%, 그후 2년간에는 50%를 감면하고, 사업용으로 도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3년간 100% 면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제조업·관광업의 경우 1천만불 이상, 물류업의 경우 5백만불 이상 투자

(20) 세제 관련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해 세금 없이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

-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단 분식회계후에 정정을 청구할 경우에는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더라도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정정 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 기간중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고속철도 운송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2004년 4월부터 운행예정인 고속철도의 운송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속버스·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감안

-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요인을 제거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 조정관세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조정관세율도 인하하였습니다.

- 조정관세 제외품목(3개) : 견직물(조정 15% → 기본 13%), 면직물(조정 13% → 기본 10%), 견사(조정 10% → 기본 8%)
- 조정관세율 인하품목(7개) : 활동·활농어(55% → 50%), 냉동홍어·오징어(35% → 30%), 냉동낙지(30% → 25%), 표고버섯(55% → 50%),

4. 과학기술·산업·에너지

(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제도를 개선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기획과 (504-6858)

- 과제선정에 있어 제도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아지도록 하고, 과제관리시스템도 연구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고객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기획 정보를 사업공고 전에 공시
 - 과제선정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탈락자에게 평가의견을 통보
 - 연구과제 관리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연구관리인증제도를 도입
- 실효성 높은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 평가결과 미흡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
 - 연구관리용어를 표준화하고 서식을 통합
 - 각 부처별로 서로 다른 용어와 서식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완화
 - 각 부처의 연구사업 공고에 대한 정보를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사업 공고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

(22)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충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507-2152)

-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도 입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입지혜택을 외국인을 위한 학교와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도 허용
 -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등을 허용
-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지원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설립형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함
- 외국인투자 유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

(23)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를 신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2110-5513)

■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서 구역 전기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 구역 전기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 구역내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 가능
- 구역 전기사업자는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 사업자와 보완공급 약관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전력시장에서 거래 가능

■ 일정한 집단 에너지 사업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공급구역 내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사업자는 계속하여 전기의 직접적인 공급이 가능

(24)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12)

■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인력지원특별법」을 200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활용여건을 개선

- 교수나 연구원이 기업의 임직원을 겸임·겸직 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하는 제도를 종전에는 벤처기업만 적용했으나, 이를 일반 중소기업(제조업)까지로 확대
-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인정

●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력활용을 다양화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10년이상)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우선분양 제도를 시행
- 전역예정인 군 장기 복무자가 중소기업에 유급으로 현장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력지원시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청년인력을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을 거치도록 한 후 채용과 연계하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신규 추진
- 업종별·지역별 조합단위로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회원 중소기업에게 공동 채용활동, 주5일제 도입, 공동 교육훈련 등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

(25)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042-481-4457)

-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규격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분야와 지원체제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이 적기에 수출하고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인증품목을 확대 조정
 - 종전 1개 인증 → 1개 품목 2개 인증 또는 1개 인증 2개 품목
 - 시험·검사비용,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규격인증 획득비용의 50% 까지 700만원 지원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동 사업의 지원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혜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참여기업, 창업기업, 그리고 소규모 수출기업의 지원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규참여기업과 창업 3년이내의 기업에 각각 평가점수 3점씩을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
 - 수출주문과 수출실적의 가점부여조건을 종전의 5만불, 10만불에서 각각 3만불, 5만불로 하향
- 중소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이를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연 3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시기가 맞지 않아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개선

(26) 벤처기업 M&A 활성화 대책을 시행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387)

-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나 영업양수도, 그리고 인수·합병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벤처기업이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 (현행) 벤처기업 → (확대) 다른 기업의 주요주주(10%이상 지분보유) 포함
 - 새해부터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는 방식의 신주-구주 주식 교환을 허용
 - 공인평가기관(기술거래소, 기술신보 등)이 현물출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법원의 심사를 생략
 -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른기업이 벤처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간소화
 -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 합병시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절차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
 - 벤처기업의 영업양수시 :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같음

■ 벤처기업의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벤처기업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
 - 완화내용 : R&D비용 지출시부터 사업기간(1년)을 산정하도록 하고, 합병주식 교부비율을 총주식수의 10%에서 3%로 완화

(27) 벤처기업의 질적수준을 고도화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494)

■ 벤처기업의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혁신능력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혁신능력 평가를 받은 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등 3가지 확인유형별로 요건을 심사
- 종전에는 혁신능력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에 적격인 것으로 평가 받았지만, 2004.1.1이후 벤처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은 55점 이상일 때 요건심사가 진행
- 혁신능력 평가 점수는 연차적으로 5점씩 높여 2005년초부터는 60점으로 조정할 계획

■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벤처넷(www.venturenet.or.kr)에서 혁신능력 평가 자가진단을 후 벤처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후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평가 진행과정은 벤처넷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8) 특허수수료 체계가 쉽고 간단하게 개편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실 (042-481-5042)

-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수수료 인상없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와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
 -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수수료 등 수수료 분류체계를 단순화
 - 민원인들이 변리사 등의 도움없이도 쉽게 수수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가산료 산정방식을 단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상시화 (개인과 소기업 70%, 중기업 50% 감면)
 - 국·공립대학이 소유한 특허권 등을 전담조직에 이전할 경우 이전등록료와 출원인 변경신청료를 면제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5. 농 림 어 업

(29) 쌀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개편

농림부 농지과 (500-1672)

- 내년부터 고령의 벼재배 농업인이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70세까지 ha당 매월 24만원씩을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합니다.
 - 지급대상자
 - (현행) 65세 이상 75세 이하인 자, 영농경력 3년 이상
 - (변경)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영농경력 10년 이상
 - 지급방법
 - (현행) 매도·임대하는 경우에 1ha당 289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 (변경) 매도시 70세까지 최장 8년간 매월 분할 지급(1ha당 241천원) 임대시 1ha당 297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 양도소득세 감면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이상 자경(自耕)하고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30)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감면

농림부 개발정책과 (500-1958)

- 농촌지역에 사람과 자본을 유치하여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접경지역은 예외)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다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이나 관광단지와 같이 부동산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은 제외
- 아울러, 도시민이 농어촌주택을 상시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주말·전원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종전에는 별장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던 것을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지방세 부담을 낮춤

◆ 대상주택의 규모

- 대지면적 660㎡(200평)이내, 주택면적 150㎡(45평)이내
- 주택의 가액
 -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내, 일반주택 매도시 1억원 이내
 - 지방세법(취득세)
- 주택의 가격만 시가표준액 2천5백만원 이내

(31) 농어업인의 영유아에게도 양육비를 지원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500-1605)

- 내년부터 농어업인이 0~5세의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그동안 농어업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와 기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영유아 자녀에 대해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 내년부터는 농지소유규모가 1ha미만이면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월평균 102천원 수준) 지원할 수 있게 됨
- 육아로 인한 농어업인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하여 농어촌에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4만여명의 농어업인 자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2) 시·군별로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추곡수매

농림부 식량정책과 (500-1751)

- 정부는 고품질의 쌀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고품질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3개 내외의 품종에 한해 수매를 실시합니다.
 - 정부수매품종은 지난해 시·군별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품질 품종을 선정
 - 품종·등급별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창고별로 단일품종을 보관하고 공매는 품종별·등급별로 실시하며 학교급식용·군관수용 등도 단일품종으로 공급해 나감으로써 쌀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
- 농가에서는 해당 시·군별 수매품종을 확인한 후 종자확보 등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상담소에 필요종자를 신청하시고, 부족한 종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종자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인근 농가와 자유평교환 가능

(33) 논농업직접지불제 지급상한을 확대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500-1807)

- 내년부터는 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상한 면적이 농가당 4ha까지 확대됩니다.
 -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논의 형상과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친환경 영농의무와 같은 지급요건을 이행한 실경작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1년부터 시행
 - 지급단가 : ('03) 진흥 532천원/ha, 비진흥 432천원/ha → ('04) 532, 432
 - '02년과 '03년도까지 농가당 각각 2ha, 3ha까지 지급하던 논농업 직불금을 '04년부터는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ha까지 확대하여 시행
 - 지급상한 : ('03) 0.1 ~ 3.0ha → ('04) 0.1 ~ 4.0ha

(34) 축산업 등록제 도입

농림부 축산정책과 (500-1896)

■ 지난해 축산법이 개정('02.12.26 공포, '03.12.27 시행)되어 축산업 등록제의 도입근거가 마련되었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등록대상 축산업은 부화업·종축업, 계란집하업과 아래에서 정한 규모의 가축 사육농가
 - 등록대상 농가규모 :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소·닭 300㎡, 돼지 50㎡ 초과시
- 등록시기는 부화업·종축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란집하업은 '04.6.26일, 가축사육업은 '05.12.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 등록시에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등록제 도입취지를 살리되 농가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최소화
 - 등록기준(시설·장비기준) : 성장단계별 구분사육시설(종축업), 부화실·병아리방 확보(부화업), 계란종량선별기·포장장비(계란집하업), 통풍 또는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구조(가축사육업) 등
- 등록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종축업·부화업·계란집하업은 1억원, 가축사육농가는 5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
 -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04.3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 두당 최소 축사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친환경 축산 교육 이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35)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농업지원 대책

농림부 과수화훼과 (500-1873)

- 한·칠레 FTA체결을 계기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약 1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지원
 - 시설 현대화, 과원규모화, 수출단지 기반 등 고품질 생산 지원
 - 산지 유통시설, 우량묘목 생산 등 생산자 조직 지원
 - 관세철폐 품목의 수입증가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안정 지원
 -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 등 지원
 - 폐업(폐원·매매)여부 확인 후 일정기간(3년간, 1년간)순소득 지원
 - * 재해보험, 자조금, 유통활성화 자금 등 현행 지원사업도 지속적 확대
- ※ FTA특별기금을 조성하여 대부분 사업은 50~100%보조, 규모화를 위한 과원매입은 융자 지원
- 지원대책, 특별기금 설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국회 계류중)하고, 개방시 피해양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6) 숲가꾸기를 원하는 산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감리제도를 도입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162)

- 숲가꾸기를 원하는 산주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국고보조율을 확대하여 숲가꾸기 산주자부담 비율을 사업비의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나무심기 : 사업비의 90% 지원(국비 70%, 지방비 20%)
 - 숲가꾸기 : 사업비의 90%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 숲가꾸기 사업에 설계-감리제도가 도입됩니다.
 - 어린나무가꾸기, 숲아베기, 천연림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관련 전문가의 설계·감리를 통해 추진 가능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설계·감리 자격기준 부여
 - 기술사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농림부문(영림)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2항)에 의한 농림부문(산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37) 국민참여형 국유림서비스 제도 도입

산림청 산림문화과 (042-481-4244)

- 국유림 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지 정화사업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
 - www.foa.go.kr 국민참여형 국유림서비스코너
 - 참여 유형 : 자원봉사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등
 - 토지에 대한 권리와 산물에 대한 이용 수익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일체의 영리활동을 배제

- 공공법인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국유림내에 휴양림과 수목원을 조성하여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회환원의 숲이 조성됩니다.
 - 휴양림과 수목원의 조성장소는 산림청에서 지정하고 사회환원의 숲 참여 기업을 공개적으로 공모
 - 조성후 시설물은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최장 20년)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 '04년에 2~3개소에 시범 조성을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38)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에 대비한 정책보험 도입

해양수산부 어업기술인력과 (3148-6861)

■ 연근해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에 대비한 정책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 보험 제도

■ 이원화되어 있었던 재해보상 책임과 보상제도(어선원 보험)를 일원화하였습니다.

- 25톤이상 어선 : 선원법 적용 → 수협 선원공제 · 민간보험 가입
- 25톤미만 어선 } ⇒
 - 5인이상 승선 어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5인미만 승선 어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5톤이상 연근해 어선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5톤이상의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보험에 당연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합니다.

- 5톤이상의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어선원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함

※ 적용제외 선박 : 5톤미만의 어선,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 기타 시험 · 조사 · 단속 등의 관공선

- 보험료 국가보조율 : 30톤 미만 50%, 50톤 미만 20%, 100톤 미만 10%

※ 어선보험은 종전처럼 임의가입 대상이며, 보험가입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보조

6. 정보·통신

(39)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인증제도를 신설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망과 (750-1253)

-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을 부여합니다.(2004. 1월)
 -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100M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 인증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기준을 신설
 - 신설된 특등급 인증기준을 통해 향후 신규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구내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구축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

(40)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를 확대시행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750-1354)

- 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는 유선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를 확대·시행합니다.
 - 시내전화 가입회사(KT·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 2004년 4월부터 인천·대구를 시작으로 7월에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에 확대 실시할 예정
 - 서비스 신청요금은 가정용은 회선당 4천원이며, 기업용 전화(DID)는 회선수에 관계없이 기업가입자당 4만 2천원임

(41)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750-1354)

-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동전화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이동전화회사를 변경하더라도 번호까지 바뀌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전화회사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
- 이동전화 회사별로 적용하는 시기를 달리하여
 - 2004. 1월부터 SKT 가입자만이 KTF 또는 LGT로 이동할 수 있으며,
 - 2004. 7월부터 KTF 가입자도 SKT, 또는 LGT로 이동할 수 있고,
 - 2005. 1월부터 LGT 가입자도 SKT, KTF로 이동할 수 있어,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전화회사를 이동할 수 있음.
- 이동전화 번호이동시에는 이용자가 1,000원의 수수료(1회)를 납부해야 함

(42)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 시행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750-1354)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사업자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 이외에 이동전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번호이며, 앞으로 이동전화 식별번호는 010 단일번호로 통합됩니다.
- 국가자원인 번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번호의 브랜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동전화 번호가 010으로 통합되면 이동전화 가입자들끼리는 010을 누르지 않고도 통화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음
- 2004년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010 번호를 부여
- 010으로의 완전통합은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010번호 전환율이 80%~90%에 이르는 시점(2007년~2008년 예상)에 추진할 계획

(43)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서비스 실시

정보통신부 정보관리담당관실 (750-2194)

- 기간통신사업·별정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04.3월)
- 전기통신사업 민원 13종에 대해 상세민원 안내와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를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창구(www.emic.go.kr)에서 이용
- 민원인은 홈페이지, 핸드폰,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공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상태 확인

(44) 디지털 TV방송을 도청소재지 지역으로 확대 실시

정보통신부 방송위성과 (750-2433)

- 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 소재의 디지털 지상파TV 방송국이 개국됩니다.
- 위 지역에 디지털TV 방송국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디지털TV 방송 가시청 권이 수도권·광역시에서 도청소재지까지로 확대
- 이로써 전국민의 80%이상이 디지털TV 시청이 가능

(45) 에스크로(escrow)서비스 시행

우편사업단 사업개발과 (2195-1221)

-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장치인 에스크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적인 전자상거래 확산정책을 지원합니다.(2004. 8월중)
- 시장환경의 변화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음
 - 인터넷 할인상품권 판매 사기
 - 하프프라자 회원제 반값판매 미이행 등
- 공신력이 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망·금융망·인터넷우체국 경험을 살려 물품대금과 동시에 배송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46) 모바일을 통한 우편번호 검색 서비스를 제공

우편사업단 사업개발과 (2195-1221)

- 최신 우편번호 자료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우편물을 이용하고 있는 정부기관·기업·쇼핑몰업체·개인 등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 6월중)
- 무선 정보통신망의 발달 추세에 부응하여 우편번호를 모바일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무선화에 대비
-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대 국민 편의성 제고

(47) 전자우편 제작 환경을 개선

우편사업단 우편마케팅팀 (2195-1521)

- 전자우편물의 내용물에 칼라와 그림파일 등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2004. 4월중)
- 우체국창구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전자우편이 기존의 수작업(소량)에 의존하는 제작환경을 자동화하여 송달속도를 단축
-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물의 내용물에 칼라와 그림파일 등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7. 의 료 · 복 지

(48)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을 확대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503-7565)

-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됩니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003년 101만 9천원에서 105만 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3년 매달 최대 89만 7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금년에는 3.5% 늘어나 최대 92만 8천원을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급
- 수급자간 급여의 격차를 완화하여 장제급여비 지원을 강화하고 고등학생 교과서 보조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가 50% 인상됩니다. 2003년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 보조액이 100% 인상됩니다. 2003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원)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현금급여기준(원)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
- 개별가구의 급여액은 현금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49)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저렴한 비용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503-7576)

-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요양시설 7개소,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 요양시설 37개소와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를 신축합니다.
 - 요양시설·요양병원 : '03년 338개소 → '04년 441개소

(5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503-7578)

- 3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가정 만들기를 지원합니다.

(51)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수준을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503-7567)

-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25만원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 2002년말 기준)의 절반이 안되는 차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됩니다.
 - 차상위계층의 보육료 지원이 정부지원 보육료의 40%에서 60%수준으로 확대 지원되며, 차차상위 계층은 40% 수준이 지원
 - 지원대상 : 119천명 → 182천명
 - 보육료 지원액 : 2003년 125~244천 → 2004년 131~257천원
-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이 인상됩니다.
 - 2003년 90천원~125천원 → 2004년 95천원~131천원
-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이 인상됩니다.
 - 2003년 201~243천원 → 2004년 212천원~257천원

(52)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을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503-7567)

- 장애인의 일반기업체 취업 확대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2004년에는 180억원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32개소로 확충하여 중증장애인 7,300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 또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시설의 생산성이 향상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자립자금의 용자액을 확대하고 보증인 제도를 완화하며, 대여금리도 추가인하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경영컨설팅과 품질 개선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53)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503-7547)

-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응급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겠습니다.
-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전문인력·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운영비와 용자금을 지원합니다.(2004년 210억원)
- 뇌졸중·심장발작 등 주요 증상별로 어느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송정보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03.1.1

(54) 희귀·난치성 질환 3종을 추가 지정하여 저소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503-7543)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그 동안에는 8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테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을 지정·운영해 왔으나, 2004년에는 3종(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을 추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55)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입원환자의 경우 6개월동안에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외)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일정금액(300만원 수준)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56) 암 조기검진 사업의 확대 및 지역단위 지역암센터 (Regional Cancer Center) 설치

보건복지부 암관리과 (503-7363)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 조기검진 사업이 2004년에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으로 확대됩니다.
-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 3개소가 설치됩니다.
 -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암의 예방 교육·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암환자들에게 효율적인 의료이용 서비스를 제공

(57)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를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토록 되어있었으나, 새해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체납후 진료함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환수하지 않습니다.

(58)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에게 보험급여를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3-7570)

- 현역병 등 병역 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으나, 새해에는 일반 가입자와 같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8. 환 경

(59)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환경부 환경평가과 (2110-6716)

- 환경영향평가지 시스코핑(Scoping)제도를 도입합니다.
 - 그 동안에는 사업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반항목(23개)과 중점평가항목 모두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간략하게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나 평가가 불필요한 항목까지 평가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중요도와 사업특성에 따라 필수적인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04.7)
-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대행업자에게 맡길 경우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평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2004.7)

(60)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

환경부 자연생태과 (2110-6748)

-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 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합니다.
 - 지금까지는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 (2004.7)

(6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환경부 유역제도과 (2110-6841)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 (2004.8)

(6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환경부 교통공해과 (2110-6799)

- 천연가스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나 청소차를 제작할 경우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
 - CO : 4.0 → 0.4g/kWh
 - HC : 0.9 → 0.2g/kWh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제작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제작시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건설장비의 배출가스도 규제

(63) 먹는물 관리를 강화

환경부 수도관리과 (2110-6880)

-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수돗물의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소독부산물질 5개 항목에 대하여 규제기준을 강화 (2004.7)
 - * 적용대상을 10만톤 이상 정수장에서 전국의 모든 정수장으로 확대
 -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하여 탁도기준을 0.5NTU에서 0.3NTU로 강화하는 한편, 정수장의 개별여과지 탁도를 연속하여 측정하도록 의무화 (2004.7)
 - * 시설용량이 1일 10만톤 이상인 정수장에 적용

(64) 폐기물 재활용 제도를 강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2110-6954)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강화합니다.
 - TV·냉장고·컴퓨터·타이어 등의 제품과 종이팩·금속캔·유리병 등에 대하여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필름형 플라스틱 포장재와 형광등에까지 확대
-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분리배출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유예하였던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

9. 근로여건

(65) 지속성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2110-7080)

-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됩니다.
 -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
 -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의무 등을 이행한 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 구직자를 추천받고 이 중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 가능
 - *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2004.1월)
 - 정주화 방안을 위해 최대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1년마다 갱신)

-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출국 만기보험을,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을 각각 가입을 하여야 함
- 사업장의 휴·폐업,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질병상해 발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금지

(66)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신설 시행

노동부 고용정책과 (507-1713)

- 2004. 1. 1부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관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요건
 -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 월 1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 지원수준 :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 20~3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
- 지원금 신청방법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67)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를 신설

노동부 고용지원과 (507-6267)

-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요건
 -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조기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업·공공부문, 전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의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근로자수가 근로시간 단축전보다 증가하는 경우
- 지원수준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 분기에 150만원을 지원 (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68) 주5일 근무제 도입

노동부 근로기준과 (507-1713)

■ 2004년 7월부터 공기업·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주5일 근무제가 가능합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법정근로시간 단축(1주 44 → 40시간)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5일 ~ 25일)
- 생리휴가 무급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월 → 3월)
- 3년간 연장근로 한도 확대(1주 12시간 → 16시간) 및 최초 4시간분 할증률 인하(50% → 25%)
- 업종·규모별 단계적 시행('04. 7 → '11년)

■ 1,000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도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 개정법을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9)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노동부 고용정책과 (503-9748)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이 개편됩니다.(2004.1월)

- 「고령자 다수 고용촉진 장려금」은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율이 변경되며 5년간 지원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를 상시근로자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에 15만원 지원(다만,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 55세 이상 고령자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
 - 지원기준율 : 전업종 6%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 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 * 업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함
 - 지원기간 : 무한정 → 5년
- 「고령자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인상
 -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50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보협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月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다만, 중소기업은 12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 55세 이상의 사람을 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 → 50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
- 지원수준 : 1인당 월 28만원씩 6개월간 지원 →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중소제조업 : 12개월간 지원)
-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을 폐지하고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설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촉진 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이 도래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 제조업의 경우 12개월간 지원)

(70) 작업환경 측정 대상과 횟수 제도 개정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507-0206)

-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의 범위와 유해인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옥내뿐만 아니라 옥외 작업장도 측정대상에 포함
 -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191종으로 확대
- 기존 횟수조정제도가 폐지되고 작업환경측정 횟수가 측정결과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측정대상 작업장이나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측정하고 그 후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실시
 - 작업공정 등에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하는 것으로 완화
 - 다만,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1회씩 측정하는 것으로 강화

10. 주거 생활 · 교통

(71)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장기 주택금융제도를 도입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503-9241)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업무를 개시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부(한은 포함)의 전액출자로 설립
 - 선진 금융기법인 유통화제도를 활용하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대출을 저리로 공급
- 공사는 서민층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값의 30%만 있어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상환능력이 있는 차입자의 경우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소득자에게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 고가주택(시가 6억원 초과)과 거액대출(2억원 초과)은 제외
 - 단기 주택담보 대출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가능

(72)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법을 전면 개편·시행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504-9133)

- 그 동안 주택건설과 공급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시행합니다.
 - 그 동안에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 주거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함
 - '주택법'의 시행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양→질)함으로써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주택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 등을 주택정책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의무적으로 실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인 「주택종합계획」제도를 도입
 -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감리자 지정 등 주택정책과 관련된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내용중 공동주택관리규약,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동주택 관리준칙 등 중요사항을 법률로 승격하여 기존주택의 관리제도 강화
- 청약통장 불법거래,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중전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73) 첨단 교통시대를 알리는 고속철도 개통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기획단 고속철도과 (504-9066)
철도청 고속철도계획과 (042-481-8912)

- 1992년 6월 착공을 시작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내년 4월 경부·호남 전구간에 고속열차가 운행됩니다.
- 전구간에 대한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04년 1월부터는 가상승객을 탑승시켜 실제상황과 같은 영업조건을 부여한 상업 시운전에 돌입

- 충분한 시운전 실시와 함께 교육훈련, 사고 수습체계 확립 등을 통해 고속 운행에 대비한 완벽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경부선은 서울~대구간은 신선으로 건설하고 대구이남은 기존선을 전철화하며, 호남선은 서울~목포간은 전철화하여 고속열차 운행
- 고속철도 개통은 교통수송체계의 일대 혁신을 가져와 수송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교통·물류난 해소에 기여하고, '전국 반나절 생활권화'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송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물류비용이 연간 1조 8,500억원 (2005년 기준) 대폭 절감
 - 서울에서 부산과 목포까지 현재 4시간 10~42분에서 각각 2시간 40분, 2시간 58분으로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
 - 철도여객 수송능력은 3.4배(개통초기 1.5배) 증가, 철도화물 수송 능력은 7.7배(2단계 사업 완공기준) 증가
- 인구와 기업의 지방분산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 패턴이 다양하게 변화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고속철도의 첨단기술 이전에 따라 기술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소재 산업·자동차산업·정보산업·항공우주산업 등 관련 산업전반에 걸친 기술 향상을 가져와 총체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

부처별 신·구제도와 법규 대비표

재 정 경 제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신 설>	○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85의 5 및 동법 시행령\$66 신설 (2004.1.1)	조세정책과 ☎503-9210
2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신 설> * 탈세제보에 의해 탈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조사를 받아 처벌받 은 경우에 한해 포상금 지급	○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하여 일정기준금액(5억원)이상 징세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국세기본법 \$84의 2 및 동법 시행령 65의 4신설 (2004.1.1)	조세정책과 ☎503-9210
3	가산금율 인하	○ 가산금 5%	○ 가산금 3%	국세징수법\$21 (2004.1.1)	조세정책과 ☎503-9210
4	소액고지서 일반우편 발송제도 도입	○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 세 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가능	국세기본법\$10 및 동법시행령\$5의2신설	조세정책과 ☎503-9210
5	외국인임직원등에 대한 근로소 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다음 방법중 선택 -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외국인학교교육비, 주택임차료 소득공제 · 월정액급여의 40%한도 ○ 과세체계 - 내국인근로자와 동일	○ 다음 방법중 선택 - 총급여액의 17% 단일세율 적용 - 총급여액의 30% 비과세후 내국인과 같은 과세체계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8의2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	<p><근로소득공제> 급여500~1500만원 구간 : 소득공제율 47.5%</p> <p><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이하 : 세액공제율 50% : 공제한도 45만원</p>	<p><근로소득공제> 급여500~1500만원 구간 : 소득공제율 50%</p> <p><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이하 : 세액공제율 55% : 공제한도 50만원</p>	<p>소득세법\$47 (2004.1.1)</p>	<p>소득세제과 ☎503-9214</p>
7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p>○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연 500만원</p> <p>○ 의료비공제대상 의료기간 의료비, 의약품·장애인 보장구·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비</p>	<p>○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p> <p>○ 의료비공제대상 추가 - 장애인보장구·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p>	<p>소득세법\$52①3 동법시행령\$110①3 (2004.1.1)</p>	<p>소득세제과 ☎503-9214</p>
8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p>○ 소득공제 한도 연 500만원 〈신설〉</p>	<p>○ 소득공제 한도 연 700만원</p> <p>○ 독학사, 학점은행제 교육비공제 허용</p>	<p>소득세법\$52①4 동법시행령\$110의3① (2004.1.1)</p>	<p>소득세제과 ☎503-9214</p>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 - 대상 : 여성근로자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영유아교육비공제 선택적용 ○ 영유아교육비공제 - 공제한도 : 연150만원 〈신설〉	○ 추가공제 확대 - 대상 : 사업자, 근로자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영유아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허용 ○ 영유아교육비공제 - 공제한도 : 연200만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신설 - 월 10만원	소득세법§51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개선	○ 공제한도 : 연600만원 ○ 상환기간 요건 : 10년이상 ○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이 있는 세대주 〈신설〉	○ 공제한도 : 연1,000만원 ○ 상환기간 요건 : 15년이상 거주기간 3년이하로 조정 ○ 공제대상 : 모든 세대주 ○ 종전의 단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로 전환시에도 소득공제 허용	소득세법§52②,③,⑤ 동법시행령 §112의3⑥,⑦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11	결혼, 장례, 이사시 소득공제	〈신설〉	○ 결혼, 장례, 이사시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연 급여2500만원이하 근로자 - 공제금액 : 사유당 연100만원	소득세법§52⑨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12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범위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 - 기타 농가부업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범위 확대 (연소득금액 1200만원 이내) - 민박, 음식품· 특산물판매 - 전통주 제조	소득세법§12 3의2호 소득세법시행령§9①, ③~⑤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택이하 소유자 비과세 - 복잡한 예외 적용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개선 추계간주임대료=(보증금등적수-건설비상당액적수 50%) 1/365 정 기예금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과세제도 단순화 - 원칙 : 2주택이하 소유자 비과세 - 예외 : 고가주택소유자는 과세 ○ 추계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공제 폐지 	소득세시행령§8의2①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14	자원봉사용역 기부금공제 허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 1일 8시간 기준 5만원 ○ 실제발생비용 : 시가 또는 장부가액 	소득세법§34② 동법시행령§81⑤,⑥ (2003.1.1)	소득세제과 ☎503-9214
15	지급조서전산매체 제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조서 제출 - 원칙 : 문서 - 예외 : 전산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매체 제출 의무화 - 원칙 : 전산매체 - 예외 : 문서제출(지급조서 50매이하, 상시근로자 10인이하 사업자 	소득세법§164④ 동법시행령§214③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16	우리사주 과세특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한도 : 연 240만원 ○대주주 조합출연금 손금한도 : 소득금액의 10% ○종업원 3년보유후 인출시과세 : 인출주식의 9%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업원출연금 공제한도 확대 : 연 400만원 ○대주주조합출연금 손금한도 : 소득금액의 30% ○종업원 3년보유후 인출시과세 : 인출금의 50%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88 의 4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기명식 선불카드 소득공제 허용 및 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소득공제 - 대상 : 신용카드 · 직불카드사용 액, 지로학원비 - 신용카드등공제율 : 20% 직불카드공제율 : 30%	○ 신용카드소득공제 - 대상확대 : 기명식 선불카드 추가 - 공제율 : 카드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18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신설	〈신설〉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 · 소득세 : 2만원 - 부가가치세확정신고 : 1만원 - 세무사의 대리신고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모두 전 자신고시 ; 납세자 1인당 1만원(연 1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104의 8 동법시행령 §104의4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19	고액 복권당첨금 등에 대한 세율인상	○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과세 - 당첨금의 20%	○ 고액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세율인상 : - 5억원 이하분 : 20% - 5억원 초과분 : 30%	조세특례제한법 §92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20	당연종합과세대상소득폐지	〈당연종합과세대상소득〉 ○ 비영업대금이익 ○ 상장 · 등록법인 대주주 배당 ○ 비상장 · 비등록법인 배당	○ 당연종합과세대상소득 폐지 ○ 일반금융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대상 판정	소득세법§14④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21	채권만기구조의 장기화 유도	○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 · 장기저 축 : 30%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만기 10년이상 장기채권 30%세율로 분리과세 선택가능	소득세법§129① 소득령§187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2	저축성보험 요건강화	○보험유지기간 : 7년이상	○ 보험유지기간 : 10년이상	소득령§25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23	장기보유주식배당특례확대	<대상> ○소액주주 ○액면5천만원이하 : 비과세 ○액면 5천만원~3억원미만 : 10%분리과세	<대상> ○ 소액주주 폐지 ○ 액면5천만원이하 : 비과세 ○ 액면 5천만원~3억원미만 : 5%분리과세	조특법§91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24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대상자 축소	<가입대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	<가입대상> ○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소유자	조특법§87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25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신설	<신설>	<대상> ○ 액면 3억원 이하분 : 비과세 ○ 액면 3억원 초과분 15%분리과세	조특법§91-3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26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분리과세	○상환기간 : 12년이상 채권 ○채 권 : 사회간접자본채권	○ 상환기간 : 15년이상 채권 ○ 채 권 : 사회간접자본채권, 수해방지채권	조특법§29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27	일몰시한연장	2003년일몰적용대상 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등 예탁금	○ 3년간 일몰시한연장	조특법§87및 부칙 법률4806호 조특법§89의3 (2004.1.1)	소득세제과 ☎503-9214
28	법인세율 인하	○과세표준 1억원초과분 27%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15%	○ 과세표준 1억원초과분 25%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13%	법인세법 제55조 (2005.1.1)	법인세제과 ☎2110-231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9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 소득공제대상 회사 - 유동화전문회사 - 증권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를 추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2004.1.1)	법인세제과 ☎2110-2317
30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신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청구시 발생한 과다납부한 세 액은 즉시 환급하지 않고 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 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	법인세법 제58조의3 (2004.1.1)	법인세제과 ☎2110-2317
31	종업원 주택 자금대여액의 인정이자 경감	○ 종업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금 리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높 은 이자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대월이자 율을 기준으로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2004.1.1)	법인세제과 ☎2110-2317
32	전자신고 근거마련	○과세표준신고 필수 첨부서류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서류를 전자신고로 제출시 서면제출의무 면제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2004.1.1)	법인세제과 ☎2110-2317
33	현금흐름표 제출의무화	<신설>	○외감법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법인 세 신고시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2004.1.1)	법인세제과 ☎2110-231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4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반기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납부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2004.1.1)	법인세제과 ☎2110-2317
35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 금액 하향조정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 기준금액 : 10만원이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 기준금액 : 5만원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2004.1.1)	법인세제과 ☎2110-2317
36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 한시적 조정	〈신 설〉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기업이 2003.7.1부터 2004.6.30까지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가능 - 기업의 투자자금 조기회수를 통한 투자활성화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04. 1. 1)	법인세제과 ☎503-9219
37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신 설〉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 : 10% 이상 3% 이상 - 벤처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을 연구·개발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시점부터 기산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2004. 1. 1)	법인세제과 ☎503-9219
38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신 설〉	○2003년 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2003년 7월1일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 적용 - 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2004. 1. 1)	법인세제과 ☎503-9219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9	지정기부금 대상확대	○법인이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 금산입하는 기부금 대상 -사립학교 등	○법인이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기부금 대상 확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 단, 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부금 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2004. 1. 1)	법인세제과 ☎503-9219
40	인턴사원해외파견비세액공제 제도	〈신 설〉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를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2 (2004.1.1)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41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투자금액의 10%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공제율을 15% 로 상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04.1.1)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42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	〈신 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2004.1.1)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43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시행 자 조세감면	〈신 설〉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외투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 지구 등은 외투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2004.1.1)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44	투자세액공제대상 범위 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 공제 제한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및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 여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2004.1.1)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45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확대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전액 및 대기업 의 석사 및 박사 인건비분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2004.1.1)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6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최저한세율 12%	○최저한세율을 10%로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2004.1.1)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
47	고속철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신 설〉	○2004년 4월부터 운행예정인 고속철도의 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2004.1.1)	소비세제과 ☎503-9224
48	외국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각 과세기간 종료 일로부터 25일 이내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9조 (2004.1.1)	소비세제과 ☎503-9224
49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 과세자의 예정고지 생략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 간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일정금 액 예정고지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생략 ○일반과세자 중 고지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의 예정고지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 항, 제27조제1항 (2004.1.1)	소비세제과 ☎503-9224
50	법인의 사업자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1퍼센트로 인하	○사업자등록가산세 등 - 개인 : 1% - 법인 : 2%	○사업자등록가산세 등 - 개인 : 1% - 법인 :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5항 (2004.1.1)	소비세제과 ☎503-9224
51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직불 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 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2%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 2%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2004.1.1)	소비세제과 ☎503-9224
52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	〈신 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 의 120% 이내인 경우에는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2004.1.1)	소비세제과 ☎503-922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3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신 설〉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을 명문화하기 위해 세법상 증여의 정의 규정 신설 ○개별 증여의제 대상(14개 유형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증여의 유형·증여가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규정 ○예시규정외에 재산의 무상사용,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의 증가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포괄규정을 신설	상속증여세법 (2004.1.1)	재산세제과 ☎2110-2321
5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04.1.1)	재산세제과 ☎2110-2321
55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 1년미만 : 36% - 1년이상 : 9~36% - 미등기양도 : 60%	- 1년미만 : 50% - 1~2년미만 : 40% - 2년이상 : 9~36% - 미등기양도 : 70%	소득세법 제104조 (2004.1.1)	재산세제과 ☎2110-2321
56	1세대3주택 양도세 강화	○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보유기간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소득세법 제95조, 104조 (2004.1.1)	재산세제과 ☎2110-232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7	투기지역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하여 탄력세율 우선 적용	○기본세율에 15%p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 가능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탄력세율을 15%p범위내에서 우선 적용	소득세법 제104조 (2004.1.1)	재산세제과 ☎2110-2321
58	주택매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증과	○개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 양도세율로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율로 정산 하여 신고·납부 ○법인의 부동산매매차액에 대하여 는 일반법인세만 과세	○개인부동산매매업중 주택매매사업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서는 - 예정신고시에는 물론 확정신고시에도 양도소득세율을 적 용하여 과세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외에 30%의 법인세 추가 과세	소득세법 제64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2004.1.1)	재산세제과 ☎2110-2321
59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한 연장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 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 하여 2003.12.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5년간 소득세 면제	-2006.12.31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18 (2004.1.1)	국제조세과 ☎503-9228
60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이 상을 출자한 내국법인 〈신 설〉	- 25% 이상을 출자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총발행주식중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합계액이 5% 이상인 경우 출자한 내 국법인)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104의6 (2004.1.1)	국제조세과 ☎503-922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1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 완화 -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 물류업 : 3천만불 이상 ○지원기간 조정 - 최초 7년100%, 3년간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5백만불 이상 - 최초 3년100%, 2년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2004.1.1)	국제조세과 ☎503-9228
6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자유구역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업용 수입자본제에 대하여 3년간 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121의 2~3 (2004.1.1)	국제조세과 ☎503-9228
63	외국인투자지역등에 대한 조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제지원 요건완화 -제조업 : 5천만불 이상 -물류업 : 3천만불 이상 -관광업 : 3천만불 이상 <신 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 3천만불 이상 -관광업 : 2천만불 이상 -물류업 : 1천만불 이상 ○2이상의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는 경우, 동 외투자역내 제조·관광·물류업 및 연구시설은 투자규모와 무관하게 세제지원 ○외국인투자 기업이 SOC사업에 1천만불 이상 참여하는 경우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 (2004.1.1)	국제조세과 ☎503-922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4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개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과세원칙 - 용역수행지국 또는 이용지국에서 과세	- 용역수행지국에서만 과세	법인세법\$93.6 소득세법\$119.6 (2004.1.1)	국제조세과 ☎503-9228
65	사용료소득의 범위조정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 기계·설비·장치 등 장비의 사용대가 및 양도소득은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 장비의 사용대가는 임대소득으로 과세 - 장비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전환	법인세법\$93.9 소득세법\$119.11 (2004.1.1)	국제조세과 ☎503-9228
66	불공정 자본거래시 분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신 설〉	○특수관계자간 불균등 증·감자, 합병등 불공정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주주의 보유주식 가치증가분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 주식발행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납부 - 원천징수시기 · 감자, 증자 : 감자 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 합병, 분할 : 합병·분할등기일	법인세법\$93.11 소득세법\$119.13 (2004.1.1)	국제조세과 ☎503-9228
67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제도 보완	○국내원천양도소득은 신고·납부로서 납세의무 확정	○예납적 원천징수 세액 - 취득가액확인이 곤란한 경우 : 양도가액의 10%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 ○양도자는 종전과 같이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	법인세법\$98 소득세법 \$156 (2004.1.1)	국제조세과 ☎503-922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간소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 B/S, I/S,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외	법인세법§97 (2004.1.1)	국제조세과 ☎503-9228
69	비거주자등의 지급조서 제출 시기 개선	○비거주자등에게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시기 -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연2회 제출	- 다음해 2월말까지 연1회제출	법인세법§120의2 소득세법§164의2 (2004.1.1)	국제조세과 ☎503-9228
70	환경오염방지 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68개	○대상품목: 94개	관세법§95 (2004.1.1)	관세제도과 ☎503-9232
7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475개	○대상품목: 515개	관세법§95 (2004.1.1)	관세제도과 ☎503-9232
72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대상품목: 87개 감면기한: '03.12.31일	○대상품목: 68개 감면기한 연장: '06.12.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118 (2004.1.1)	관세제도과 ☎503-9232
7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초원자재 등의 관세율 인하 지속 농축수산업 물품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대상품목 확충	○철광석, 나프타 등 주요 기초원자재의 관세율 : 0% ○원유 : 3%	○철광석, 망간광, 연광, 동광, 티타늄광, 석탄, 나프타 제조용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액(N.G.L), 원면, 양모, 알루미늄설, 원목, 직접환원철, 천연인산칼슘, 천연고무, 산화니켈등 17개 품목 : 무세화 지속 ○원유 : 3% ○농축수산업 지원 : 사료용완두콩, 브라인 슈림프 알등 ○중소기업 소요물품 : 주물용 코크스 등 4개 품목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 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2004.1.1)	산업관세과 ☎503-923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4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요인 제거 와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 위한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축소 및 세율인하	○조정관세 대상품목 : 활동 등 23 개 품목	○ 조정관세 대상품목 : 활민어 등 20개 품목 - 조정관세 제외(3개): 견직물, 면직물, 견사 - 세율인하 (7개) *활동 · 활농어(55% → 50%), 냉동홍어 · 오징어(35% → 30%), 냉동낙지(30% → 25%), 표고버섯(55% → 50%), 메주(25% → 22%)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 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 관한규정(대통령령) (2004.1.1)	산업관세과 ☎503-9234
75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장기주택금융 도입	〈신 설〉	○ 정부(한은 포함)의 전액 출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및 업무 개시 - 집값의 30%만 있어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진 금융기법인 유동화제도를 활용하여 장기 · 고정금리 · 분할상환 주택대출을 저리로 공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4. 3. 1)	금융정책과 ☎503-9241
76	외환시장 개장시간 변경	○09:30~12:00, 13:30~16:30	○ 『09:00~16:00』으로 변경 - 주식 · 채권 · 외환시장간 유기적 연계 강화 및 외환거래의 연속성 보장 등을 위해 개장시간 변경 * 은행간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으로 일반인의 은행이용과는 관련이 없음	2004.1.2	외화자금과 ☎503-927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7	「소비자 안전센터」 설치·운영	○ 결함 물품등 소비자위해요소에 대한 감시·경고 기능을 수행할 소비자안전 전담기구 미비	○ 소비자위해요소에 대한 감시 및 경고업무를 수행할 전담 기구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운영 ○ 24시간 위해정보 수집·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 신속히 소비자에게 경고(소비자안전경보)하여 위해 물품 및 용역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을 추진	소비자보호법 제6조, 제28조 및제49조,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재경부훈령) (시행일: 2004.1.1.)	소비자정책과 ☎503-9060
78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 36.1% ○ 재산세 가감산율: 면적기준 △20~60%	○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 39.1%(3%p 인상) ○ 재산세 가감산율: 국세청 시가기준 △20~100%	지방세법 (2004.1.1.)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추진팀 ☎2110-2504~7

국 세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사업장현황 신고서의 전자 제출	○매년 1월31일까지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제출 가능	○홈택스서비스이용에 관한 고시제28조 (과세자료 전자제출 대상)	정보개발2과 (2630-8412)
2	인터넷을 통한민원발급서비스 제공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하면 민원 6종에 대해 전자문서를 발급 (조회) - 전자문서의 발급번호를 문서 수령처에 알려주면 문서 수령처는 해당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홈택스서비스(HTS)에서 발급된 전자 문서의 내용을 조회함으로써 종이문서 수령에 같음하고 있음 - 즉, 전자문서를 개인용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로 사용 못함	○민원 33종에 대해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하여 발급한 전자문서를 개인용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음	○시스템 구축 - 2004년1월:사업자 등록증명 등 6종 서비스 - 2004년3월:거주자 증명 등 11종 서비스 - 2004년5월:소비계 세민원 16종 서비스 ○관련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전자 문서의 출력사용 등) - 2003.9.29 시행	〈시스템구축〉 정보개발2과 (2630-8302) 〈제도운영〉 납세자보호과 (397-1542)

관 세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보세공장 수입물품 재반입물품의 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환급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 환급	관세법 제106조 제1항제2호 2004.4.1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8
2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에 관세청장이 지정	<신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관세청장이 지정	관세법 제157조의2 2004.4.1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8
3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신설>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시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	관세법 제199조의2 2004.4.1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8
4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장치기간 확대	○보세창고내 장치물품으로 정부비축용 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한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보수용물품의 장치기간 - 비축에 필요한 기간	○현행내용에 추가하여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도 보세창고내 장치기간을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확대	관세법 제177조 2004.4.1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합 운영	<p>○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을 중심으로 운영</p> <p>- 근거법령 :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재경부 소관)</p> <p>- 설치장소 : 공, 항만</p> <p>○자유무역지역법은 제조, 가공업을 중심으로 운영</p> <p>- 근거법령 : 자유무역지역의지정에관한법률(산자부 소관)</p> <p>- 설치장소 : 공항만 배후지 및 내륙지역</p>	<p>○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일원화</p> <p>- 관계법령 통합</p> <p>- 두 지역의 기능을 통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p>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로 통합 2004.4.1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8
6	여객명부 미제출자 벌금부과에서 과태료로 전환	○여객명부 미제출자에 대해 벌금 부과(1천만원)	○여객명부 미제출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200만원)	관세법 제277조 2004.1.	특수통관과 ☎ 481-7836
7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단일 간이세율 적용	○여행자의 간이세율은 합산세율을 기초로 8단계(20, 25, 30, 35, 45, 55%, 복합세율)구조이고 평균 과세비율은 27.4%	○여행자로서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000 불이하인 개인용품 및 선물용품은 단일 간이세율 20% 적용(골프채, 주류 제외)하고 미화 1,000불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개별세율 적용	관세법시행령 제96조 2004.4.예정 (시행령개정시)	특수통관과 ☎481-783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Sea&Air환적화물 일괄운송절차 마련	○Sea&Air환적화물은 선박으로 입항한 후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공항에 반입하여 항공으로 반출	○Sea&Air환적화물은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절차를 같음 -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만으로 일괄운송 가능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8
9	국내 개항간 외국무역선(기)에 의한 화물운송절차 마련	○국내 개항간 물품 이동은 보세운송 절차에 따름	○최초 입항지에서 B/L상 최종목적지로 운송하는 수입화물, 환적화물, 수출화물 및 내국물품인 공콘테이너는 환적절차에 의하여 운송 가능 (적하목록 제출만으로 운송 가능)	2004.1.1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8
10	환적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허용	○환적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불가	○세관장은 환적화물로서 다음의 경우 보수작업 승인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세구역에 장치된 환적화물을 효율적인 운송 등을 위해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04.1.1 환적화물처리절차에관한특례고시 2004.1.1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8
11	소액물품 면세기준 상향 조정	○당해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	○당해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2004.4.	특수통관과 ☎481-783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CY내 장기보관 FCL 컨테이너 화물은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보관	○LCL컨테이너화물이 하선장소에 반입하여 내장된 상태로 10일이 경과하면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보관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하선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 - LCL컨테이너 화물 : 10일 - FCL컨테이너 화물 :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 고시 제3조에서 정한 장치기간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CY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기간 연장 가능	컨테이너관리에 관한고시 제4-1-1조 2004.1.1	수출입물류과 ☎(042)481- 7825~8
13	주요 공항만의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의 장치기간 단축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은 6월임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1년임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3월임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제3조 2004.1.1	수출입물류과 ☎(042)481- 7825~8
14	하선(기)장소가 부두 또는 항역 밖 보세구역인 경우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	〈신설〉	○하선장소가 부두밖 보세구역인 경우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 ○하기장소가 입항지 공항항역밖 보세구역인 경우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2004.1.1	수출입물류과 ☎(042)481- 7825~8
15	컨테이너화물의 하선기간 단축	○하선신고수리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은 5일 이내에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함. 〈신설〉	○하선신고수리일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은 3일 이내에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함.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의 하선기간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2004.1.1	수출입물류과 ☎(042)481- 7825~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여행자 휴대반출입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골프채 등 반복 휴대반출입물품 매 출입국시 세관신고	○골프채 등 반복 휴대반출입물품 최초 출국시 한번만 세관 신고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 통관에관한고시 2004.1.	특수통관과 ☎481-7832
17	세관장확인대상품목의 축소	○수출입시 각종 특별법에서 요건확 인이나 추천 등 제한사항을 해당 부처에서 확인받도록 되어 있으 며, 이중 국민보건·사회안전등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단 계에서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요건확인대상품목이 과다하여 물 류지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 개별법상 수입허가·신고·심사대상이 아닌 물품, 수입자 자기인증(확인)제도로 전환되는 물품 및 국민보건 등과 직결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 확인방법지정고시 2004.2(예정)	통관기획 ☎481-7815
18	위탁판매물품의 인수인계서 전자문서 전송	○위탁판매물품의 서류에 의한 인수 인계	○세관위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자문서로 위탁판매물품 인수인계	몰수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2004.1.1	수출입물류과 ☎042)481- 7825~8
19	인터넷판매 및 전자입찰제 도입	○진열판매 및 서류에 의한 입찰판매	○인터넷판매(제외: 주류및 담배류) 및 전자 입찰제 도입	몰수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 내지 28조 2004.1.1	수출입물류과 ☎042)481- 7825~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0	인터넷판매 물품의 환불 기준 변경	○구매자가 구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요구 가능	○인터넷판매제 도입에 따른 물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요구 가능	몰수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3조의2 제1항 2004.1.1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8
21	위탁판매대금 불입기준 변경	○판매한 날의 익일까지 불입	○인터넷판매 및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실제판매와 대금 결제일이 상이하고, 결제전 주문취소에 대비하여 판매대금 입금일의 익일로 변경	몰수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3조의2 제1항 2004.1.1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8
22	PDA를 활용한 검사업무 효율성 제고	○검사장소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물품 검사후 세관으로 복귀하여 처리	○검사직원에게 PDA를 지급하여 검사후 검사장소에서 즉시 처리	관련규정 개정 불필요 2004. 2	통관기획 ☎ 481-7686

조 달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p>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납품이행 실적평가가 면제되는 범위 확대</p> <p>재무상태 평가분야에서 제조업체 또는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에 불리한 평가요소 개선</p> <p>신인도 평가분야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규정 신설</p>	<p>○ 추정가격이 5억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서 납품 이행실적 평가를 면제</p> <p>○ 재무상태 평가분야 - 입찰당시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상의 업종평균비율과 평가대상업체의 “최근년도 결산서” 내용을 비교하여 평가</p> <p>-</p>	<p>○ 추정가격이 10억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서 납품 이행실적 평가를 면제</p> <p>○ 재무상태 평가분야 - 평가대상 업체의 결산서를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발간 연도로 통일</p> <p>○ 신인도 평가분야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0.5점 가점 부여</p>	<p>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2004.1)</p>	<p>구매제도과 ☎042) 481-7212</p>
2	<p>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p>	<p>○ 기술평가 : 70%</p> <p>○ 가격평가 : 30%</p>	<p>○ 기술평가 : 80%</p> <p>○ 가격평가 : 20%</p>	<p>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04. 1)</p>	<p>IT·용역팀 ☎042) 481-7268</p>
3	<p>시설공사 경쟁촉진을 위한 수의 계약사유 평가기준 개선</p>	<p>○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사규모별 종합평점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80점 이상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90점 이상</p>	<p>○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평점 기준을 상향 조정 - 80점 이상 90점 이상</p>	<p>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2004. 1. 1)</p>	<p>토목과 ☎042) 481-7376</p>

기 획 예 산 처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부처별로 칸막이식 지원	○지방의 특성·우선순위에 따라 지역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계류중)	사회재정1과 ☎3480-7736
2	재정성과관리제도 도입	○선시행 22개부처 주요 재정사업 30%에 대한 성과 목표·지표 개발	○선시행부처 '05년 예산요구서 성과계획서 작성·제출 ○여타 행정부처 제도 착수		재정분석과 ☎3480-7657
3	기금관리강화	○금융성기금은 국회심의없이 소관 부처에서 확정	○금융성기금도 국회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3 삭제 (국회계류중)	기금제도과 ☎3480-7971
4	기금정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4개기금 정비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및 부칙 (국회계류중)	기금제도과 ☎3480-7971
5	부담금 정비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8개 부담금 정비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 및 부칙 (2004. 1. 1)	기금제도과 ☎3480-797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의무 유예 기간 연장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없으나, 설립 · 전환일로부터 1년간은 유예기간 인정	○지주회사 설립 · 전환일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 인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8조의2② (2004.4.1)	독점정책과 ☎503-9122
2	유예기간이 인정되는 지주회사 설립 · 전환 유형 확대	○현물출자, 회사의 분할 · 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 자회사 주식가액 증가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 · 전환한 경우에만 유예기간 인정	○지주회사를 설립 · 전환하는 모든 경우에 유예기간 인정	동법제8조의2② (2004.4.1)	독점정책과 ☎503-9122
3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율 요건	〈신설〉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50%(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은 30%)이상 소유하여야 함	동법제8조의2③ (2004.4.1)	독점정책과 ☎503-9122
4	비상장 공동출자법인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여야 함	○비상장 공동출자법인인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이상으로 완화	동법제8조의2①②③ (2004.4.1)	독점정책과 ☎503-9122
5	자회사간 출자	○자회사간 출자 가능	○자회사간 출자 금지	동법제8조의2③ (2004.4.1)	독점정책과 ☎503-9122
6	손자회사의 지배목적 소유주식에 대한 처분 유예기간 인정	〈신설〉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지배목적 소유주식은 손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 처분 유예기간 인정	동법제8조의2④ (2004.4.1)	독점정책과 ☎503-9122
7	심의절차 운영의 신증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회심판' 위주로 심의절차 운영	○ '심의속개제도' 제도를 도입하여 쟁점안전에 대한 신중한 심의실시	사건절차규칙	심판관리1 담당관실 ☎504-514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기업결합신고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상대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신고 ○계열회사간 임원겸임도 신고의무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이 2조원 이상)의 주식취득·소유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이 완료된 이후 신고 ○주식취득·소유의 경우 20%(상장·등록법인은 15%)이상이 되는 시점에 1회만 신고의무 발생 ○현행 기업결합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추가 연장가능 기간 6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회사의 규모기준 (구체적 기준은 검토중)을 설정하여 기준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면제 ○신고의무 면제 ○원칙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신고토록 전환 ○이후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재신고할 의무가 부과 (최초신고시 지배관계가 형성된 경우는 제외) ○추가연장 가능 기간을 90일로 확대 	동법 제12조 (2004.4.1)	기업결합과 ☎507-1934
9	공정거래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조치 확정 전에는 소권행사 제한 ○무과실책임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조치 또는 그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소 제기 가능 ○고의·과실 추정 ○법원의 손해액인정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제56조, 제57조 (2004.4.1)	심판관리1 담당관실 ☎504-5142
10	부당한 공동행위의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매출액의 5%, 정액과징금은 1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매출액의 10%, 정액과징금은 20억 	동법제22조 (2004.4.1)	공동행위과 ☎504-416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담합조사 협조자의 범위 확대	○조사에 응하여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포함	동법제22조의2 (2004.4.1)	공동행위과 ☎504-4163
12	담합제보자 보상금 상향조정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동행위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지급규정 (2003.11.12)	공동행위과 ☎504-4163
13	중요정보고시적용 대상 확대	〈신설〉	○추가지정 : 부동산 분양업, 여행업, 컴퓨터용 프린트 제조·판매업 ○삭제 : 담배 제조·판매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표시광고과 ☎504-9474
14	표준약관 제정신청권 확대	〈신설〉	○소비자단체 등에 표준약관 제정신청권 부여	약관법 (공포한날부터)	약관제도과 ☎507-0957
15	표준약관표지 불법사용자 과태료 부과	〈신설〉	○표준약관표지 불법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약관법 (공포한날부터)	약관제도과 ☎507-0957
1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강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 ○원사업자는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원사업자는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신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하도급법 제14조, 제25조의3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급기획과 ☎503-889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선급금,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의 “지연이자율” 규정의 명확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연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하도급법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급기획과 ☎503-8894
18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원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신설〉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하도급법제30조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급기획과 ☎503-8894

※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은 12.12일 현재 국회 계류중

금 용 감 독 위 원 회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 개선	<p>○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적정 또는 한정 <일반기업> 자본금 5억원 이상 (신 설)</p> <p><벤처기업> (신 설) (신 설) (신 설)</p>	<p>○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p> <p>○자본금 10억원 이상 ○최근 ROE 10% 이상</p> <p>○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경상이익 시현 ○최근 ROE 5% 이상</p>	<p>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5조제1항제2호 · 제5호의2 · 제8호, 제6조, 제13조제2항 · 제4항제4호 (2004.1.2시행)</p>	<p>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3</p>
2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p>(신 설)</p> <p>○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퇴출기준 (액면가의 30% 미만)</p>	<p>○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으로경상손실 · 시가총액요건 시행</p> <p>○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퇴출기준 강화 (액면가의 40% 미만)</p>	<p>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의2 및 제28조제1항 제11호의2 (2004.1.2시행)</p> <p>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23조제1항 제4호 및 제28조제1항제17호 (관리종목지정2004.1.2, 퇴출 2004.7.1시행)</p>	<p>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3</p>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신대표지수로서의 스타지수 공표	○코스닥의 상품 운용지수로서 코스 닥50지수를 운용	○코스닥50지수외에 스타지수를 병행운용	코스닥시장 주가 지수 관리기준 (2004.1월말 예정)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3
4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Random-End) 방식 도입	○시·종가결정시 단일가매매로 결정	○시·종가 예상체결가격 등이 급변(±5%이상)하는 종목의 경우 임의종료 방식으로 가격결정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2004.1.26 시행)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1
5	호가 및 주문유형 다양화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3 종류	○기존 3종류 외에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도입 ○호가(주문)에 IOC(즉시체결, 잔량취소) 또는 FOK(전량체 결 또는 전량취소) 조건 부여 가능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2004.1.26 시행)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1
6	상장주식 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단, 거래방법은 종전과 동일)	선물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2004.1.1 시행)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1
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은 증권투 자신탁업법 등 개별법률에 의해 규제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별 적용법률을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를 운용, 판매 등 기능별로 적용 하여하여 동일 기능에 동일규제를 적용	간법투자자산운용업법 (2003.1.)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3771-5054

과 학 기 술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국지원센터 개소)	〈신설〉	○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체계적·조직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2003.7.30) 제17조	기초과학정책과 (503-7640)
2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추가	〈신설〉	○국립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장비의 확보를 위한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지원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과학기술기본법 (2004년 초)	정책총괄과 (503-7638)
3	기초의과학 집중육성	〈신설〉	○기초의과학의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할 기초의과학육성기구를 지정 운영토록 함	생명공학육성법 (2004.6월)	생명환경기술과 (504-2366)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신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시책수립 이행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실시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 방사능방재대책법 (2004.2.25)	원자력방재과 (503-0358)

농 립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 설〉	○농지소유규모 1ha미만 농어가의 0~5세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최대 월131천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으로서 타부처 소관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제외 (중복지원배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2004. 1. 1)	여성정책 담당관실 (500-1605)
2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금 지원단가 현실화	○학기당 200만원 이내	○학기별 등록금 한도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4.1.1)	여성정책 담당관실 (500-1607)
3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선정·활용 사업지역 확대	○7개도(경기, 제주 제외)	○9개도	농업농촌기본법 (2004. 1. 1)	정보화담당관실 (500-1631)
4	디지털 사랑방 설치지원	〈신 설〉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디지털 사랑방(인터넷 이용 환경, 위성TV, 홈페이지 구축 등) 설치를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 제공, 홈페이지구축 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9개도에 20개소 설치 - 1개소당 3,000만원 지원	농업농촌기본법 (2004. 1. 1)	정보화담당관실 (500-1629)
5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시지역 확대	○복숭아·포도·단감·감귤에 대한 재해보험을 주산지 위주 실시	○'03년 사과·배에 이어 '04년 부터 복숭아·포도·단감·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전국 어디서나 보험에 가입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	농업정책과 (500-166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농어민건강 보험료 지원	○납입보험료의 22% 경감 (약 8,550원)	○납입보험료의 30% 경감 (약 12,750원)	국민건강보험법 (2004. 1. 1) 농림어업인의삶의질 향상및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국회계류중)	농업정책과 (500-1661)
7	농어민연금 보험료 지원	○월 표준소득 22만원 보험료의 50% 정액지원(7,700원)	○'04상반기 : '03지원과 동일 ○'04하반기 : 월 표준소득 37만원 보험료의 1/2한도내 납입보험료의 50% 정률지원(최고 14,800원 지원)	국민연금법(2004.7.1) 농림어업인의삶의질 향상및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국회계류중)	농업정책과 (500-1661)
8	영농규모화사업	○농지대금 지급(기반공사 매도자) - 계약금 : 계약체결시 10%지급 - 잔 금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일시불로 잔액지급	○매매자금 지급 〈일반농지〉 - 기존 지급방법과 동일 〈경영이양농지〉 - 계약금 : 종전과 동일 -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농가희망에 따라 일시금 지급(50%, 70%)하고 지급약정 체결후 잔금을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 * 잔금지급시 경영이양직불금과 매각대금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농지과 (500-167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 개편	<p>○지급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65세이상 75세이하인 자 - 영농경력 : 3년이상 <p>○지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임대하는 경우에 1ha당 289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지급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63세이상 69세이하인 자 - 영농경력 : 10년이상 <p>○지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시 70세까지 최장 8년간 매월분할 지급 (1ha당 241천원) - 임대시 1ha당 297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p>○양도소득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대상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고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p>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2004.1.1)</p> <p>조세특례제한법 (2004.1.1)</p>	<p>농지과 (500-1672)</p>
10	농업법인 해산 청구권한 이양	○농림부장관이 시장·군수에 위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	농업·농촌기본법 (2003.12.11)	농촌인력과 (500-168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농가부채경감대책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연장	○'01~'03년 상환 도래하는 중장 기정책자금에 대해 3%로 2년거 치 5년 분할상환	○'03년말 이전에 발린 중장기정책자금 중 '04.1.1이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에 대해 1.5%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 한특별조치법 (국회계류중)	협동조합과 (500-1698 ~1699)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3년거치 7년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연장	"	"
	경영회생자금 지원	○4%, 3년거치 5년	○3%, 3년거치 7년	"	"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	○금리 6.5%	○금리 3%	"	"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금리 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 금리 6.5%	○금리 3% - 단, 매년 대출잔액의 10%이상을 상환하는 농업인에 대해 서만 금리인하 적용	"	"
	조기상환 인센티브 강화	○정상상환 :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20 ○조기상환 :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30	○정상상환 :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 ○조기상환 :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40	"	"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2	지역별 추곡수매대상 품종제한	○품종 제한없이 농산물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합격품을 수매 ○품종별 구분없이 수매·보관·방출	○'04년산부터 정부수매 품종을 고품질 벼 중심으로 시·군별 3개 품종 내외로 제한하여 수매 ○품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공매는 품종별, 등급별로 실시 ○학교급식용·군관수용 등 밥쌀용은 단일 품종으로 공급	추곡약정수매 시행지침 (2003.12)	식량정책과 (500-1751)
13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정부지원체계 개편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부지원(시설, 운영자금)시 차등없이 지원	○선평가, 후지원을 원칙으로 경영우수 RPC 및 구조조정 추진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우선하고 평가등급별로 차등 지원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4월이후)	식량정책과 (500-1760)
14	포장양곡표시제	○포장양곡의 규격표시 - 생산연도, 중량, 사용원료명,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전화번호, 원산지 표시 * 위반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포장양곡 표시사항에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등 소비자가 쌀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양곡관리법 (2004. 1. 1)	식량정책과 (500-1764)
15	논농업직불제 지급규모 확대	○지급규모 : 농가당 0.1~3.0ha	○지급규모 : 농가당 0.1~4.0ha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	친환경농업 정책과 (500-180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6	비료생산업자 등록범위 확대	<p>○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비료생산업자를 한정</p> <p>- 음식물쓰레기 등을 원료로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염분 등으로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 발생</p>	<p>○음식물쓰레기 등을 원료로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도 시·도지사에게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도록 관리강화</p> <p>○다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p>	비료관리법 (2003.12.31)	농산경영과 (500-1777)
17	비료보증표 교부 의무화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규정	○“비포장 상태로 판매·유통 및 공급”되는 비료의 경우에도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등의 보증표를 교부토록 의무화	비료관리법 (2004.6월경)	농산경영과 (500-1777)
18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규모 통합	○농가 및 영농규모에 따라 대규모(50ha, 50농가)와 소규모(10~20ha, 10농가)로 구분하여 10억 또는 2.5억원 정액지원	○대·소규모 사업구분을 폐지하되 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여 10ha, 10농가이상일 경우에는 2~1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친환경농업 정책과 (500-1810)
19	친환경농업육성 사업내용 변경	○퇴비화·액비화시설은 지구내 축산농가가 있는 경우 설치 가능	○지구내 축산농가가 없더라도 타지역(인근) 축산농가와 협약을 통해 설치가능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친환경농업 정책과 (500-1810)
20	친환경직불제 지급대상 기준 변경	○저농약 신규인증 농가 지원	○저농약 신규인증 농가 지원 제외 - 다만, 종전의 지급대상자는 '04년 신청가능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친환경농업 정책과 (500-180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1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농업지원대책 추진	<신 설>	○한·칠레 FTA에 대비 과수분야의 경쟁력제고를 지원 - 고품질생산시설, 과원규모화, 기반정비, 우량묘목생산, 거점 산지유통센터 등 지원 -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격하락시 일정부분 지원 - 폐업희망농가에 대한 폐업지원 -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 특별기금 설치 * 7년간 8천억 규모의 기금을 포함 총 1조원 지원계획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농어업인의지원에 관한특별법 (국회계류중)	유통정책과 (500-1822) 과수화훼과 (500-1873)
22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시범운영	<신 설>	○GAP 시범사업 실시 -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토양·수질검사비 및 잔류농약 등 의 분석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단지 소속 농가 등 - 사업량 : 30품목, 300농가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	소비안전과 (500-1838)
23	인삼 품질관리 강화 및 불법유통 근절 ○검사기준 부적합품에 대한 처분명령 ○미검사품에 대한 처분명령 ○수거, 검사, 압류 등 처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미검사품 등 판매자에 대한 처벌강화	<신 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기준 미달제품은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 - 불응하는 경우 압류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은 압류 또는 검사 ○처분명령 위반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삼산업법 (2004. 7. 1)	채소특작과 (500-186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4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신 설>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 1차 시험 : '04.2.8 - 2차 실기시험 : '04.4.11	농산물품질관리법 (2003.11.20)	유통정책과 (500-1830)
25	시장도매인제도 시행	○도매시장 농산물거래방법 - 도매시장법인에 상장, 경매를 통하여 중도매인이 경락받아 분산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는 서울강서도매시장 개장('04.6) - 시장도매인이 경매 방법외에 매수·위탁·중개 등을 통해 분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 정에관한법률 (2004. 6)	유통정책과 (500-1828)
26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항목 - 수출물류비: 수출시 소요되는 포장, 선별, 운송비 등	○지원대상항목 추가 - 수출조성비 · 수출농축산물의 안전·위생·식품위생의 확보와 규격화·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검사·연구·정보 서비스 비용 · 수출농가·관련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국내의 연수·교육비용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	식품산업과 (500-1855)
27	우수농산물수출 지원조건 개선	○사업항목 - 원료구매지원 - 운영활성화 지원 · 우수농산물유통지원 · 유망품목시장개척지원 ○제재사항: 관련법령 위반시 대출 제한 등	○사업항목을 단일화 - 우수농산물지원 ○제재사항 추가: 수입국의 안전성규정 위반, 수출질서 문란 행위 및 국의 손상행위도 관련법령 위반과 동일하게 간주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	식품산업과 (500-185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8	축산업등록제 도입	○종축업·부화업: 시장·군수에 신고제로 운영 ○가축사육에 따른 등록의무는 없음	○종축업·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할 경우 시·군에 등록 - 가축사육시설 300㎡ 초과하는 규모의 소사육업과 양계업, 50㎡를 초과하는 양돈업 ○가축사육업은 2005.12.26일까지, 계란집하업은 2004.6.26일까지 등록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두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확보하고, 친환경교육 이수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함	축산법시행령 (2003.12.27)	축산정책과 (500-1896)
29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신 설>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시범도입 - (소) 사료작물재배면적 확보, 분뇨 토양환원 - (돼지·닭) 적정 사육밀도 유지, 분뇨발생량 감축 - (기본) 친환경축산 경영장부 기록(분뇨처리방식 등), 환경·방역관련 교육이수 등 - 지급기준: 축종별 요건 이행시 호당 1,000만원, 기본요건 준수시 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축사주변 조명수 식재 비용 지원(최대 200만원/호)	농림사업 시행지침 (2004. 1. 1)	축산정책과 (500-1899)
30	품질고급화 장려금 신설	○'03. 6월말까지 한·육우 거세	○'04. 7월부터 1등급 이상 출현된 한·육우 거세우에 한해 한우는 두당 20~30만원, 육우는 두당 1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	축산법 (2004. 7. 1)	축산경영과 (500-1905)
31	한우다산장려금 폐지	○3산이상 한우 송아지 생산농가에게 두당 15~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	<폐 지>	축산법 (2004. 1. 1)	축산경영과 (500-190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2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및 위반시 처분강화	○소독시설 구비·소독실시대상 : 300㎡이상 농장, 도축장, 가축시 장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최고 300만원	○소독설비 대상 확대 - 집유장·사료업체·종축장·부화장·비료제조업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최고 5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규칙 (2003.12.24)	가축방역과 (500-1939)
33	가축거래기록 의무 신설	〈신 설〉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과 축종의 경우 해당축종의 농가에서 가축거래기록을 유지해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2004상반기)	가축방역과 (500-1939)
34	농장·마을 질병관리등급 부여 제도	○종축장을 대상으로 위생방역관리 우수농장 인증(농림부고시)	○축산단체가 농장·마을단위로 방역과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 - 우수농장·마을에는 방역비용 일부를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규칙 (2004상반기)	가축방역과 (500-1939)
35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강화	○종계장에 대하여만 방역관리 ○추백리 검사 등 방역관리	○부화장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추가 - 씨알 반입시 및 부화전 소독 의무화 - 계사·씨알 등 소독방법을 구체화 ○가금티프스 검사기준 추가 -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용 암탉을 방역관리 대상에 추가 -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프스 예방접종 금지 - 검사 1개월전 항균약제 투약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2004상반기)	가축방역과 (500-1942)
36	혈청검사 등 수수료 부과제도 범위 확대	○혈청검사·검역수수료만 징수	○병성감정·시험·분석도 수수료 부과 - 전염병 신고자 및 국가·지자체가 의뢰한 병성감정은 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2004상반기)	가축방역과 (500-194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7	동물수입 사전신고 강화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원숭이 10두 이상의 개를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신고	○5두 이상의 고양이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도 신고대상을 10두 이상에서 5두 이상으로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규칙 (2004. 1. 1)	가축방역과 (500-1939)
38	광우병검사 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위주로 연간 1,000건 검사 * 모니터링 : 시료채취후 검사결과 판정전까지 해당 축산물의 유통이 가능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규제검사를 확대 - 규제검사는 양·사슴 각 50두, 소는 의심우 전두수에 대해 실시 * 규제검사 : 시료채취후 검사결과 판정전까지 해당 축산물의 유통을 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2004하반기)	가축방역과 (500-1940)
39	오리·거위 등 8개축종의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처리 허용	○오리·거위 등 8개 축종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하여야 함 * 8개 축종 : 닭·오리·사슴·토끼·거위·칠면조·메추리·꿩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가축의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한 도살·처리 허용 -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 하여야 함	축산물가공 처리법 (2004상반기)	축산물위생과 (500-1917)
40	식육포장처리업 분리·신설	○ '포장육'을 생산코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함	○식육포장처리업 신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존 영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 마련(2004년말 까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의 교부를 받아야 함)	축산물가공 처리법 (2004하반기)	축산물위생과 (500-191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1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의무는 축산물 가공업 등 영업자에게만 부여 - 슈퍼 등에는 판매금지 의무 미부과	○슈퍼·식품점객업소에 대하여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 물에 대하여 판매 등 금지 - 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판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축산물은 압류·회수·폐기 등 조치	축산물가공 처 리 법 (2004하반기)	축산물위생과 (500-1917)
42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주체 확대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 장 금지 의무를 영업자에게만 부여	○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함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가공 처 리 법 (2004하반기)	축산물위생과 (500-1917)
43	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자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법 제7조제1항(허가받은 작업장 에서 도살) 위반 - 법 제10조(부정행위금지) 위반 - 법 제12조제1항(검사관의검사) 위반	○포상금 지급사항에 4가지를 추가 - 법 제4조(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위반 - 법 제22조제1항(영업 허가) 위반 - 법 제24조제1항(영업 신고) 위반 - 법 제33조제1항(판매등 금지) 위반	축산물가공 처 리 법 (2004하반기)	축산물위생과 (500-191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4	축산물위생감시원제도 도입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제도 확대	○검사관만이 영업장에 출입·수거 · 검사 가능 ○농림부, 시·도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둠	○위생교육을 받은 관계공무원을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하여, 식육거래기록의무제·등급표시 등 부정유통 단속 강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시·군·구에서도 임명하여 위촉 토록 확대	축산물가공 처 리 법 (2004하반기)	축산물위생과 (500-1917)
45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 미지정 작업장의 HACCP 명칭 사용금지 * 작업장 :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장	○명칭사용 금지 의무 없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HACCP를 지정받지 않은 작업장 의 영업자는 HACCP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축산물가공 처 리 법 (2004하반기)	축산물위생과 (500-1917)
46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 활성 화를 위한 세제지원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농어촌 주택을 신규 취득한 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증가 ○농어촌주택을 취득, 주말·전원주 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상시 거주 치 않을 경우 별장으로 취급되어 지방세 증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주택을 신규 취득, 1세대2 주택이 되더라도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거 주치 않더라도 지방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2004. 1) 지방세법 (2004. 1)	개발정책과 (500-1957~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7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감리 위탁요율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의 사업은 별도의 요율이 없이 특례사항으로 기준요율의 50~80%를 적용 ○공사감리 요율과 대상액은 인가권 자로부터 인가 또는 승인된 시행 계획서에 따라 적용	○특례사항을 삭제하고 기준요율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기준 요율 재산정하여 조정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산정을 위한 요율적용 대상공사 비는 예정금액(계약금액/낙찰율)으로 하며, 착공시 정한 요율을 준공시까지 적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2004. 2)	개발정책과 (500-1957~8)
48	환경친화적 생산기반정비 추진	○농업생산의 기초인 토지(농지), 용수 등 자원의 효율적·경제적 개발과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 농촌용수개발, 생산기반개발, 농지확대개발, 시설유지·관리 등의 사업 추진	○농업생산기능 위주의 생산기반 정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조성 및 관광·레저공간 등 부대시설을 설치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	개발정책과 (500-1959)
49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 한 전원마을 조성 추진	○면단위 농어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 ○사업내용 - 정주권개발 대상면의 발전가능성 이 큰 중심(거점)마을에 대하여 생활환경,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전원 마을 조성 추진 ○사업내용 - 수요자의 취향에 따른 친환경적인 전원주거단지, 소규모 농장에 주거시설이 딸린 체재형 주말농원, 일거리가 있는 은퇴농장 등 조성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	농촌진흥과 (500-1964~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지원규모 - 2~3년간 30~50억원 수준 지원 (보조 20~30, 용자 10~20) * 지원대상 : 정주권개발면	○지원규모 - 사업별로 2년간 20~25억원 수준 지원(보조 10~20, 용자 5~10) * 지원대상 : 정주권개발면		
50	경지정리사업 추진방식 변경	○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경지정리 - 농업진흥지역내 잔여대상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30ha이상 우량농지 위주로 추진하고, 10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	○사업 추진계획 및 대상지 조정 - 일반경지정리는 '04봄 마무리 1천ha 추진 후 사업중단 · 5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 - 대구획정리 사업량 조정 · (당초) 200천ha (조정) 164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	농촌진흥과 (500-1969~70)
51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	〈신 설〉	○권역 단위로 마을별 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하고, 전통 문화 휴양 등 농촌의 다원적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소득확충시설 및 권역 특성 사업 지원 - 지역여건에 따라 향후 소득증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발 ○지원규모 - 보조 : 권역당 70억원 수준 (국고80%, 지방비20%) - 용자 : 주택신축 및 개량 * 지원대상 : 정주권개발면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	농촌진흥과 (500-1964~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2	<p>녹색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p> <p>○마을주민 참여확대 유도</p> <p>○철저한 사후관리 유도</p> <p>○친환경농업 확산 유도</p>	<p>○지원대상</p> <p>- 단일마을 : 전체 20호 이상인 마을로서 전체 가구의 1/3 또는 10호 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p> <p>- 복합마을 : 각 마을의 가구수 합계가 30호 이상이고, 마을당 전체가구의 1/3 또는 5호 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p> <p>〈신 설〉</p> <p>〈신 설〉</p>	<p>○지원대상</p> <p>- 단일마을 : 전체 20호 이상인 마을로서 전체 가구의 1/2 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p> <p>- 복합마을 : 각 마을의 가구수 합계가 30호 이상이고, 마을당 전체가구의 1/2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p> <p>○시장·군수의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 전담 배치계획 제출 의무화</p> <p>○친환경농업실천에 대하여 심사 총배점의 10%범위내에서 가점부여</p>	<p>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p>	<p>농촌진흥과 (500-1961,2,8)</p>
53	<p>저수지 비상대처계획 (EAP)</p> <p>수립·운영</p>	<p>〈신 설〉</p>	<p>○홍수 등 농업용 저수지에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제방붕괴 등) 발생에 대한 단계별 비상대처요령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p> <p>- 저수용량 300만^m이상 저수지는 정부예산지원(국고100%)을 통해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 수립</p> <p>- 저수용량 300만^m미만 저수지는 시설관리자(시·도)가 계획 수립·운영</p>	<p>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p>	<p>시설관리과 (500-1993~4)</p>

농 촌 진 흥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퇴비의 수분규격 및 유기질비료의 유해성분 기준신설	○퇴비에 대한 수분 규격이 없음 (2002년부터 자율준수토록 하고 있음)	○퇴비의 등급에 따라 수분 규격을 설정 - 일반퇴비 : 50%이하 - 그린퇴비 : 45%이하	농진청 고시 [비료공정규격] (2004. 1. 1)	농업자원과 (031-299-2591)
		○퇴비에 대해서만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을 규제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한 유해성분 기준이 없음	○유기질비료와 일부 부산물 비료에 대해서도 현행 퇴비의 유해성분기준을 적용 - 비소, 카드뮴 등 8종	농진청 고시 「비료공정규격」 (2004. 1. 1)	농업자원과 (031-299-2591)
2	로테르담협약 발효에 따른 위해 농약의 수출입 사전승인제 신설	○농약의 수출은 법 적용 배제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과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입 제한 처분한 농약을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	농약관리법 (국내에 협약 효력 발생시 : '04.2.24)	농업자원과 (031-299-2591)
3	생물농약 등록기준 신설	○농약관리법상 미생물농약만 등록 가능(생화학농약, 천적 등 생물 농약 등록기준이 없음)	○미생물농약의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설정 ○생화학, 천적 등 생물농약 등록관리규정을 신설 - 화학농약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 - 천적은 작물을 가해하는 해충에 기생하거나 포식하는 생물	농진청 고시 「생물농약의등록시험방법및서류검토기준」 (2004.4월 시행예정)	농업자원과 (031-299-2601)
4	우량비료 평가기준 신설	○비료관리법상 우량비료를 지정 하여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정기준이 없어 우량비료 육성 지원이 안되고 있음	○우량비료 지정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설정 고시하여 우량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	비료관리법 시행령 및 농진청고시 「우량비료 평가기준」 ('04.상반기 시행예정)	농업자원과 (031-299-2597)

산 림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산림유역관리	○사방, 조림, 육림 등이 유역전체의 방재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산발적, 국소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저하	○집수유역 500ha 이상이고 계류를 따라 상·하 연결되는 곳의 조림, 육림, 사방, 임도구조개량, 환경보전 수질정화 등의 사업을 통합하여 유역 단위 산림사업 추진 - '04 예산 : 2개소(5,000백만원)	시 책 (2004.1.1)	산지관리과 (042-481-4185)
2	산사태 위험지도 제작	○주택배후, 주요산업시설 주변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를 관리하여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에 과학적 대응 미흡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GIS를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도 제작 ('04~'05)	시 책 (2004.1.1)	산지관리과 (042-481-4185)
3	임도설계 및 시설 기준 개선	○설계시 홍수량 확률 빈도 30년 적용 ○노면 중단기율기 11%이상 또는 11%이하인 연약지반에 포장·쇄석 부설	○설계시 홍수량 확률 빈도를 50년으로 확대 ○노면 중단기율기 8%이상 또는 8%이하인 연약지반에 포장·쇄석 부설	산림법시행규칙 (2004.1.1)	산지관리과 (042-481-4182)
4	임도타당성 평가 항목 개선	○임도설치의 필요성, 적합성, 경제성 조사	○경제성 항목을 환경성으로 대체	산림법시행규칙 (2004.1.1)	산지관리과 (042-481-4182)
5	국민참여형 국유림관리	<신 설>	○국유림 관리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 - 단체의숲, 자원봉사의숲, 산림레포츠의숲, 사회환원의숲으로 구분 추진	시 책 (2004.1.1)	산림문화과 (042-481-4241)
6	사회환원형 국유 휴양림 조성	<신 설>	○공익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이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하여 일반국민에게 개방	시 책 (2004.1.1)	산림문화과 (042-481-424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산림소득종합자금제도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	○융자금을 통합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 지원 - 시설·장비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	농림사업시행지침 (2004.1.1)	사유림지원과 (042-481-4195)
8	산림내 불법행위 처벌강화	○산림형질변경 허가·신고규정 위반(산림법)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전용 허가규정 위반(산지관리법)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산지관리법 (2003.10. 1)	산림보호과 (042-481-4082)
9	산림자원관리지침 개정·시행	○현행 산림자원관리지침이 사업 실행의 실질적인 지침이 되지 못함	○산림의 기능구분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으로 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2004.1.1)	산림자원과 (042-481-4162)
10	숲가꾸기 산주 자부담율 개선	○산주자부담율 20%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국고보조율 개선으로 산주 자부담 경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시 책 (2004.1.1)	산림자원과 (042-481-4162)
11	숲가꾸기 설계·감리 시범사업 확대 시행	○대상지 : 16개 시·군	○대상지 : 50개 시·군	설계·감리제도 시행 지침 (2004.1.1)	산림자원과 (042-481-4162)
12	경제림육성단지 모델화 사업	<신 규>	○경제림육성 단지에 대한 산림실태조사, 산림관리 계획을 모델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추진 - 대상지역 : 경기·강원지역 - 사업규모:10천ha(120백만원)	시 책 (2004.1.1)	산림자원과 (042-481-415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경제림 육성단지 조립	○경제림 육성단지 구분없이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조립추진	○경제림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시·도(시·군)에서 설정한 경제림 육성 대상지 산림에 대한 조립계획을 별도로 사업 계획에 반영 추진 - 조립계획량 : 5,000ha	시 책 (2004.1.1)	산림자원과 (042-481-4154)
14	수목원진흥 기본 계획수립	<신 설>	○수목원의 확충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관한법률 (2004.1.1)	산림보호과 (042-481-4261)
15	수목원조성 산지전용 및 대체 자원조성비 부과	○보전임지전용 - 산림청장의 허가 ○대체조립비 부과 - 국·공립 : 면제 - 사 립 : 50%	○산지전용 - 산림청장에게 신고 ○대체자원조성비 부과 - 수목원법에 의거 조성계획이 승인된 수목원 : 면제	산지관리법 (2003.10.1)	산림보호과 (042-481-4261)
16	수목원조성 농지 조성비 부과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 국·공립 : 50% - 사 립 : 100%	○농지조성비 부과 - 수목원법(제2조)에 의한 모든 수목원 : 50%	농지법시행령 (2004.1.1)	산림보호과 (042-481-4261)
17	자연휴양림 조성	○사유휴양림에 대한 용자는 사업 실행 후 실행	○사업실행 전 사업계획 공정에 따라 대출 실행	농림사업시행 지침 및 시책 (2004.1.1)	산림문화과 (042-481-4247)
18	사유림 매수	○경영가능 임지를 주로 매수	○앞으로는 경영가능임지는 물론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및 국토보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도 매수	산 립 법 (2004.1.1)	국유림관리과 (042-481-411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9	임업경영 컨설팅제도	<신 설>	○임업인의 경영혁신 노력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제도 시범시행 - 지원비율 : 보조50% (국고30%, 지방비20%) - 지원한도 : 경영체당 평균 8.5백만원 - 지원규모 : 20농가	산 립 법 (2004.1.1)	사유림지원과 (042-481-4195)
20	헬기에 GPS 위치판독기 설치	○헬기의 위치는 조종사와 지상의 무선통신으로 파악 - 통신채널이 제한되어 동시에 여러대 헬기 위치파악 불가능	○GPS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헬기의 위치정보를 파악 - 헬기 정비, 운항시간 등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	시 책 (2004 상반기)	산불방지과 (042-481-4078)
21	무선통신 간이 기지국 설치	○무선 중계기가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일부 지역은 원거리로 교신 불가능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하여 사무실과 중계기 중간지점에 간이 기지국 설치	시 책 (2004 하반기)	산불방지과 (042-481-4078)
22	국가등산로 지정	<신 설>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등산로를 국가등산로로 지정 관리	산림법시행규칙 (2004.1.1)	산림문화과 (042-481-4241)
23	산림휴양문화 종합정보망 구축	<신 설>	○산림휴양정보, 산림교육정보, 산림문화정보, 산촌정보 등을 종합한 포털사이트 구축	시 책 (2004.1.1)	산림문화과 (042-481-4247)
24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인증	<신 설>	○시민단체 등이 개발·운영하는 산림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추진	시 책 (2004.1.1)	산림문화과 (042-481-424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5	산림욕장 조성	○산림욕장 대상지 면적은 1단지 10ha이상	○산림욕장 대상지 면적은 1단지 5ha이상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시책 (2004.1.1)	산림문화과 (042-481- 4247)
26	민유임도 국고 보조율 조정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50% : 40% : 10%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80% : 10% : 10%	시 책 (2004.1.1)	산지관리과 (042-481- 4182)
27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 사업비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비 -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경남, 부산)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2004.1.1)	산림보호과 (042-481- 4086)
28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	○육림사업의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실행	○태백산맥,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분포하는 금강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육성사업 추진 -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 소나무임지 비료주기 - 천연히중종자 발아 촉진 사업, 파종·식재 등 추진 ※ 사업량 : 400ha(989백만원)	시 책 (2004.1.1)	산림자원과 (042-481- 4154)
29	조림·숲가꾸기 사업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활용	○조림·숲가꾸기 사업이력이 종이 문서(대장) 형태로 보관·관리됨 에 따라 자료훼손 및 활용도가 낮음	○전국 민유림 조림·숲가꾸기 사업이력 DB 구축 ○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 개발·활용	시 책 (2004.1.1)	산림자원과 (042-481- 416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0	학교숲조성 시범학교 지정	〈신 설〉	○학교숲 조성학교 중 일부학교를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시범학교로 시범 운영	산림법시행규칙 (2004. 1. 1)	산림문화과 (042-481-4244)
31	밤작업로 자금지원	○신규사업대상지에 한하여 자금 지원	○수요에 따라 신규사업지 및 보수가 필요한 기존작업로에 대한 자금지원	산림법시행규칙 (2004. 1. 1)	사유림지원과 (042-481-4195)

산 업 자 원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균형발전시책추진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균형발전시책 추진 -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 수도권/비수도권을 포괄하는 지역발전사업 추진 - 「지역의 자립발전 역량강화」와 함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상생발전 기틀 마련 ○ 지역중심의 사업 추진 -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 ○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구축 - 안정적, 자율적 지역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 주요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1.1)	균형발전정책과 (2110-5604)
2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년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지역의 산학연 연계 사업 추진,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각종 시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 중앙정부의 지역사업 예산 지원방식이 달라졌음 - 중앙정부의 지역사업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원하게 되며, 지역은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1.1)	균형발전정책과 (2110-560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	공장설립음부즈만 사무소설치 및 운영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 공장설립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 공장설립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3 (2004.2월부터시행)	지역산업진흥과 (2110-5597)
4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의 통합운영 추진	○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별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의 관세자유지역에는 기존업종에 제조업종까지 입주 를 허용 ○ 기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수 있도록 함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지역산업진흥과 (2110-5598)
5	무역의범위에 용역의 수출입을 포함	○ 무역의 범위 - 물품 -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온라인망 을통해 전송되는 게임, 영상물, 전자서적 등)	○ 무역의 범위 - 물품 -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 용역(컨설팅,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 스템설계, 문화콘텐츠, 기술 등)	대외무역법제2조 및 시행령제2조의2 (2003.12.29)	무역정책과 (2110-5315)
6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입지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입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도 입 지 지원 혜택 부여	외국인투자촉진법 (2004.1.1)	투자정책과 (507-215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제 도입	○ 주요 경쟁국(중국, 싱가포르)과 달리 대규모첨단기업 유치시 제시할 수 있는 현금지원금액 없음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로서 공장시설 등의 신축 등을 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 (2004.1.1)	투자정책과 (507-2152)
8	외국인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외국인투자유치에 공로가 많더라도 포상금 미지급	○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외국인투자촉진법 (2004.1.1)	투자정책과 (507-2152)
9	주유소가격표시판 표시방법 변경	○ 할인가격을 정상가격위에 표시 가능	○ 할인가격은 정상가격 밑에, 그 크기가 정상가격보다 크지 않게 표시	석유류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고시) (2004.3.1)	석유산업과 (2110-5453)
10	LPG승용차 사용범위 확대	○ LPG승용차사용대상 - 장애인 및 국가상이 유공자와 그의 보호자	○ 추가허용대상 -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와 그의 보호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2003.12.20)	가스산업과 (2110-5465)
11	구역전기사업제도 신설	○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모든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발전·배전·전기판매의 겸업은 불가능 - 기존에 전기를 직접공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04.2.24 까지만 직접공급 허용	○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한 공급구역내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공급 가능 ('04. 하반기) - 기존 집판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 직접공급 계속 허용 ('04.2.25부터)	전기사업법 제2조, 제7조, 제92조의2 (2004. 하반기)	총괄정책과 (2110-5513)

중 소 기 업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매출채권보험 도입	○ 어음보험 운영 * 보험대상에 “어음”에 한정	○ 보험대상을 “어음” 이외의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	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 한특별조치법 (2004. 1.10)	자금지원과 042)481-4378
2	환위험관리 지원	〈신 설〉	○ 중소기업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운영	- (2004. 2. 1)	자금지원과 042)481-4375
3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 서비스 개시	〈신 설〉	○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120여개국 입찰정보 제공	- (2004. 1. 1)	판로지원과 042)481-4467
4	벤처확인 혁신능력 평가점수 상향 조정	○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 는 혁신능력평가결과가 50점 이상이어야 가능	○ 현행 50점 이상을 55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2004. 1. 1)	벤처정책과 042)481-4494
5	벤처기업 M&A 활성화	○ 벤처기업간 20% 한도내에서 주식교환 허용	○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의 주주간 주식교환 허용 (모회사-자회사간 100% 포괄적 주식교환 허용)	상 법 (2004. 4. 1 예정)	벤처정책과 042)481-4387
6	벤처기업 M&A 활성화	〈신 설〉	○ 구주의 현물출자·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제도 도입	”	”
7	해외인증획득지원품목, 분야, 지원금	○ 1회당 1개사 1인증 1품목 ○ 인증비용의 50%, 700만원 한도	○ 1회당 1개사 2인증 또는 1인증 2품목 ○ 인증비용의 50%, 1,000만원 한도	- (2004. 1. 1)	기술지도과 042)481-4457
8	해외인증획득지원 평가기준	〈신 설〉 ○ 수출실적 10만불당 1점 부여 ○ 수출주문 5만불당 1점부여	○ 신규참여 및 창업3년내 업체 3점 가점 부여 ○ 수출실적 5만불당 1점 부여 ○ 수출주문 3만불당 1점 부여	”	”

특 허 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수수료체계의 단순화	○ 수수료 항목이 일정한 규칙 없이 배열되어 출원인이 혼동할 우려가 많고 체계가 너무 복잡	○ 권리별로 수수료체계를 단순화하여 민원인이 쉽게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징수규칙 (2004년부터)	기획예산 담당 관실 ☎042) 481-5042
2	개인 및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	○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시기를 2005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한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상시화 - 개인 및 소기업 70% 감면 - 중기업 50% 감면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징수규칙 (2004년부터)	기획예산 담당관실 ☎042) 481-5042
3	변리사 시험시기 정례화	○ 1차 : 3~5월경 ○ 2차 : 8월경 ※ 시험실시 2개월전 시험시기 공고	○ 1·2차 시험시기 정례화 - 1차 : 3월 첫째주 일요일 - 2차 : 8월 둘째주 수·목요일	변리사법 제4조의2 (2004년부터)	산업재산보호과 ☎042) 481-5181
4	변리사 1차시험 시간연장	○ 1교시 : 100분(각과목 50분) - 산재권법·민법 ○ 2교시 : 90분(각과목 45분) - 자연과학개론·영어	○ 1교시 : 140분(각과목 70분) - 산재권법·민법 각각 20분 연장 ○ 2교시 : 120분(각과목 60분) - 자연과학개론 10분, 영어 20분 각각 연장	변리사법 제4조의2 (2004년부터)	산업재산보호과 ☎042) 481-5181
5	변리사 2차시험에서 법전 및 전자계산기 사용허용	○ 사용불허	○ 사용허용 ※ 법전은 특허청 발간예정	변리사법 제4조의2 (2004년부터)	산업재산보호과 ☎042) 481-518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영업비밀보호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밀 침해시 개인만 처벌하고 국외유출은 1억원, 국내유출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영업비밀 침해주체를 전·현직 임직원에 한정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가능 ○ 기술상의 영업비밀 침해만 처벌 ○ 미수, 예비음모는 처벌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업·법인도 처벌할 수 있고 국내·외 유출 모두 이득액의 2~10배 벌금을 부과하는 부당이득 가중벌금제도 신설 ○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 가능 ○ 경영상의 영업비밀도 처벌 ○ 미수, 예비음모죄도 처벌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개정(안) * 공포(2004.1월 예정) 후 6월부터 적용	산업재산보호과 ☎042) 481-5188
7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 추가	○ 규제조항 없음	○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및 형태모방행위 규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개정(안) * 공포(2004.1월 예정) 후 6월부터 적용	산업재산보호과 ☎042) 481-5188

정 보 통 신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	○안산, 청주, 김해, 순천 등 전국 17개 지역에 대해서만 실시	○시내전화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서로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을 대도 시 지역으로 확대	2004. 3월 : 인천, 대구 2004. 7월 : 부산 2004. 8월 : 서울	통신이용제도과 ☎ 750-1354
2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신 설>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 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동전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2004년 1. 1.>	통신이용제도과 ☎ 750-1354
3	이동전화 010번호통합 시행	<신 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사업자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이외에 이동전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 는 새로운 번호로, 2004년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 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010 번호를 부여	<2004년 1. 1.>	통신이용제도과 ☎ 750-1354
4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지침 개정	○1등급, 2등급, 3등급, 준3등급 등 4개 등급	○각 가정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디지털방송 수신 등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특등급” 부여 하는 ‘특등급 인증’ 을 신설 ○준3등급 폐지	2004. 1월	초고속정보망과 ☎ 750-1253
5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 개정 고시	○평가인증대상 정보보호제품 3개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 템, 가상사설망(VPN)	○기존의 평가인증대상 정보보호품목 외에 3개 품목(지문인 식시스템, 운영체제보안, 스마트카드)을 추가	2004. 1월	정보보호산업과 ☎ 750-1253
6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 서비스 실시 (www.emic.go.kr)	○제한적 온라인 민원서비스 운영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 민원의 온라인 서비스 시행 - 전기통신사업 민원안내 -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 민원처리상태 공개 서비스	<2004. 3. 1>	기획관리실 정보관리담당관 ☎ 750-219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디지털TV방송 도청소재지 지역으로 확대 실시	○디지털TV방송이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대해서만 실시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지역으로 확대 실시 - 전국민의 80% 이상이 시청가능	2004년중	방송위성과 ☎ 750-2433
8	에스크로(escrow)서비스 시행	〈신 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망, 금융망, 인터넷 우체국의 경험을 살려 물품대금과 동시에 배송을 지원하는 서비스 실시	〈2004. 8월중〉	사업개발과 ☎2195-1221
9	모바일을 통한 우편번호검색 서비스 제공	〈신 설〉	○모바일을 통하여 최근의 우편번호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편리하게 우편번호 검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004. 6월중〉	사업개발과 ☎2195-1221
10	전자우편물의 업그레이드	○단순한 서신내용만 흑백으로 지원됨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칼리화 하고 그림파일 등 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급화 함	〈2004. 4월중〉	우편마케팅팀 ☎2195-1521

보 건 복 지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안마원 개설	〈신 설〉	○소규모(35평 이하)의 안마원 개설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함	안마사에관한규칙 2003.9.16	보건의료정책과 (2110-6273)
2	개방병원 제도	〈신 설〉	○개방병원운영 희망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의 료 법 2003.9.1	보건의료정책과 (2110-6273)
3	시체의 해부 및 해부명령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시체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함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	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법률 2004.3.30	보건의료정책과 (2110-6273)
4	시체의 관리	〈신 설〉	○시신이 이식용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체를 해부하는 자 등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시체해부및보존에 관한법률 2004.3.30	보건의료정책과 (2110-6273)
5	전자의무기록	〈신 설〉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장비를 정함	의료법시행규칙 2003.10.0	보건의료정책과 (2110-6273)
6	원격의료	〈신 설〉	○원격의료를 하고자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정함	의료법시행규칙 2003.10.1	보건의료정책과 (2110-6273)
7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신 설〉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의료법시행규칙 2003.10.1	보건의료정책과 (2110-627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전문간호사자격	○보건, 마취, 정신, 가정분야만 허용하며 자격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	○보건, 마취, 정신 및 가정 등 4개 분야로 되어 있는 범위에 감염관리, 산업, 응급 등의 분야를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그 자격기준 및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시체해부및보존에 관련법률 2004.3.30	보건의료정책과 (2110-6273)
9	중환자실 기준	〈신 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의 중환자실을 운영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시설규격을 마련함	의료법시행규칙 2003.10.0	보건의료정책과 (2110-6273)
10	의료광고범위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한 8가지 내에서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의료인의 경력 등을 포함하여 확대	의료법시행규칙 2003.10.1	보건의료정책과 (2110-6273)
11	의료기관평가	〈신 설〉	○의료기관 평가 중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의 범위는 대상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의료 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하며, 의료기관평가의 절차·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의료법시행규칙 2003.10.1	보건의료정책과 (2110-6273)
12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신 설〉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응급의료의 수준 향상 및 국민의 알권리 신장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전문인력·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운영비 및 융자금 지원(04년 210억원) ○뇌졸중·심장발작 등 주요 증상별로 어느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가능한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송정보 시스템 신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003. 1. 1	보건자원과 (2110-6306)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의료기관회계기준 시행	<신 설>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을 준수해야 함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2004. 1. 1부터 실시 -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2005. 1. 1부터 실시 -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2006. 1. 1부터 실시	의료법 제49조의2 및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2004. 1. 1	보건자원과 (503-7547)
14	장애수당 지급	○월 1인당 5만원	○월 1인당 6만원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44조 2004. 1	장애인정책과 (2110-6241)
15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월 1인당 4만5천원	○월 1인당 5만원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45조 2004. 1	장애인정책과 (2110-6241)
16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강화	○150개소 135억원	○151개소 141억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2004. 1	장애인정책과 (2110-6241)
17	장애인직업재활사업 강화	○222개소 190억원(7,007명)	○232개소 216억원 7,300명	장애인복지법 49조 2004. 1	장애인정책과 (2110-6241)
18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보증인 면제 및 대여금리 4%, 130억원	○보증인 면제 및 대여금리 4%, 150억원	장애인복지법 37조 2004. 1	장애인정책과 (2110-6241)
19	장애인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리터당 210원	○리터당 280원	장애인복지법 49조 2004. 7	장애인정책과 (2110-6241)
20	장애인차량표지 갱신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 역 이용 가능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라 4종류로 구분하여 발급 - “주차가능”과 “주차불가”,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 ○실질적으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가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2004. 1	장애인정책과 (2110-624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1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확대	○4종 -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5종 -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장애인복지법 제57조 2004. 1	재활지원과 (503-8500)
22	장애인복지관 운영 확대	○전국 106개소	○126개소(20개소 추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2004. 1	재활지원과 (503-8500)
2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확대	○전국 100개소	○130개소(30개소 추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2004. 1	재활지원과 (503-8500)
24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 확대	○전국 115개소	○130개소(15개소 추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2004. 1	재활지원과 (503-8500)
25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신 설〉	○전국 7개소(중앙센터 1, 지방센터 6)	장애인복지법 제53조 2004. 1	재활지원과 (503-8500)
26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확대	○연간 출생아의 70% 수준지원	○2004년도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검사 실시	모자보건법 2004.1	건강정책과 (2110-6327)
27	희귀·난치성질환 저소득 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를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 8 종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새로 지원하게 될 희귀·난치성 질환 3종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04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지침	질병관리과 (2110-6339)
28	국가암조기검진 사업	○암검진사업(4종)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해 검사 실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으로 확대	암관리법 ('03.5.29)	암관리과 (503-736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9	지역암센터 설치	<신 설>	○암관리사업의 활성화로 지역단위 암환자들에게 효율적인 의료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 3개소 설치	암관리법 (2003.5.29)	암관리과 (503-7363)
30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	○치과병원과 해당학회에서 임의로 치과의사를 수련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를 법제화하여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 수련교육시행	치과의사전문의를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 규정 (2004. 3)	구강보건과 (2110-6352)
31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안내지침 2004.1	자활지원과 (507-6421)
32	농어촌형 자활후견기관 지정 운영	<신 설>	○농어촌 지역에 맞는 자활후견기관 설치 운영 - 37개소	자활사업안내지침 2004.1	자활지원과 (507-6421)
33	자활지원센터 시범운영	<신 설>	○2개소 12억원	자활사업안내지침 2004.1	자활지원과 (507-6421)
34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대상 확대	○대상자 - 학생 - 장애인직업재활참가자 - 자활공동체참가자	○대상자 - 학생 - 장애인직업재활참가자 - 자활공동체 참가자 - 자활사업 참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자활지원과 (507-6421)
35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대도시 4인가구 최고재산소유 한도 - 5,745만원	○대도시 4인가구 최고재산소유한도 확대 - 5,745만원에서 6,330만원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지침 (2004. 1월)	생활보장과 (2110-619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36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 친정부모등은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부양의무자인 친정부모 등은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판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지침 (2004. 1월)	생활보장과 (2110-6191)
37	자동차 보유 극빈층에 대한 특례	< 신 설 >	○자동차 보유 극빈층에 대한 특례 -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내 처분을 전제로 보호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지침 (2004. 1월)	생활보장과 (2110-6191)
38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가	○현금급여기준 - 4인가구 89만 7천원 ○근로능력가구 장제급여비 : 20만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 5만원	○현금급여기준 증가 - 4인가구 89만 7천원에서 92만 8천원으로 인상 ○근로능력가구 장제급여비 50% 인상 -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고등학생 교과서대 100% 인상 -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지침 (2004. 1월)	생활보장과 (2110-6191)
39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신 설 >	○입원환자는 보험적용 진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일정금액 (300만원수준)까지만 부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004년)	보험정책과 (503-7570)
40	암질환 외래진료비본인부담률 경감	30~50%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약국포함)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기준 2004. 1. 1.	보험급여과 (503-7534)
41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종	○외래진료비중 환자가 20%만 부담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12종에서 파킨슨병, 전신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이 새로 추가	본인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기준 2004. 1. 1	보험급여과 (503-753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2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 개선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급여비를부당이득금으로 환수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날 부터 2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환수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 2004년	보험정책과 (503-7570)
43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보험급여 적용대상에 포함	< 신 설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일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2004년	보험정책과 (503-7570)
44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운영	○중앙 및 지방 19개소 운영	○전국 8개 시·도에 추가설치	아동복지법 제24조 2004.1.1	가정·아동 복지과 (2110-6221)
45	방과후 공부방 운영 지원	<신설>	○전국 244개소 방과후 공부방 운영비 지원 ○지원액 672천원/월,개소	아동복지법 제16조 2004.1.1	가정·아동 복지과 (2110-6221)
46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신설>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상담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설치·운영	건강가정육성법 2004.1.1	가정·아동 복지과 (2110-6221)
47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전국 5개소 운영	○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확대 운영 (전국 10개소)	모자복지법 제19조 2004.1.1	가정·아동 복지과 (2110-6221)
48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4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 125만원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 2002년말 기준)의 절반이 안되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영유아보육법 2004.1.1	보육과 (2110-623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9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및 교재교구비 지원 확대	○영아반 지원 9,553개소 ○교재교구비 8,098개소	○영아반 지원 18,410개소 ○교재교구비 지원 18,908개소	영유아보육법 2004.1.1	보육과 (2110-6233)
50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확대	○영아전담보육시설 50개소 신축 ○장애아전담시설 10개소 신축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시설 80개소 신축 ○영아전담보육시설 280개소 신축 ○장애아전담보육시설 40개소 신축	영유아보육법 2004.1.1	보육과 (2110-6233)
51	보육정보센터 확충	○12개소	○보육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정보센터 확충(16개소)	영유아보육법 2004.1.1	보육과 (2110-6233)
52	의료복지시설 확충	○요양시설 : 111개소 ○실비요양시설 : 50개소 ○전문요양시설 : 132개소 ○치매요양병원 : 45개 소 ※ '03 : 338개소	○요양시설 : 118개소(7개소 증) ○실비요양시설 : 87개소(37개소 증) ○전문요양시설 : 182개소(50개소 증) ○치매요양병원 : 54개소(9개소 증) ※ '04 : 441개소(103개소 증)	노인복지법 34조 2004. 1. 1	노인보건과 (2110-6213)
53	2007년 도입, 시행될 공적노인 요양보장제도 모형결정	〈신 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 관리운영체계, 요 양보장급여종류 및 요양보호수가, 기능평가기준 및 전문 인력양성제도화방안 등이 확정	2004년도	노인보건과 (2110-6213)
54	무료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확대	○백내장 및 망막수술 : 800안('03)	○백내장 및 망막수술 : 1,500안('04)	노인복지법 제27조 2004. 1. 1	노인보건과 (2110-6213)
55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120개소 ○주간보호시설 : 166개소 ○단기보호시설 : 31개소 ※ '03 : 317개소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152개소(32개소 증) ○주간보호시설 : 179개소(13개소 증) ○단기보호시설 : 35개소(4개소 증) ※ '03 : 386개소	노인복지법 제38조 2004. 1. 1	노인보건과 (2110-6213)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6	홀로사는 거동불편노인을 위해 공휴일에도 식사배달 실시	〈신 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5,000명에게 공휴일에도 식사 배달 실시	노인복지법 제4조 2004. 1. 1	노인보건과 (2110-6213)
57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신 설〉	○국민연금관리공단내에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국민연금법제42조	노인복지정책과 (2110-6201)
58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신 설〉	○7대 광역시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노인복지법제23조	노인복지정책과 (2110-6201)
59	지역사회시니어클럽 확대	○20개소 운영	○30개소 운영	노인복지법제23조	노인복지정책과 (2110-6201)

환 경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선정 제도(스코핑제도)도입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일반항목(3개분야 23개항목)과 사업별 중점평가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를 지역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 범위원회에서 평가대상사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를 협의 결정토록 함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법 제29조 (2004. 7. 1)	환경평가과 ☎2110-6716
2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발주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을 위한 대행계약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와 평가를 일괄하여 맡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함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법 제7조제2항 (2004. 7. 1)	환경평가과 ☎2110-6716
3	환경영향평가기준의 확대	○현행 환경영향평가기준으로 환경기준(대기, 수질, 소음)만을 정하고 있음	○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태 자연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환경영향평가기준으로 추가 설정함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법 제30조 (2004. 7. 1)	환경평가과 ☎2110-6716
4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 의무	○공개 의무규정은 없었으나 정보공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평가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법 제6조의2 (2004. 7. 1)	환경평가과 ☎2110-6716
5	환경신기술 현장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종전에는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00.9 제정)에 따라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만 입찰가점 부여, 시공실적 인정 등의 혜택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는 환경신기술 보유업체에 입찰가점을 부여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효과를 위해 환경신기술 표지('ET' 마크) 제도 도입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환경신기술 취소제도 도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 4 (2004.1.1)	환경기술과 ☎2110-672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자연생태 기초조사 실시	○지정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기초조사 실시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을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으로 변경 ○특정도서 지정을 위하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등에 대하여 자연생태 기초조사제도 신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6조1항 (2004.7)	자연정책과 ☎2110-6737
7	특정도서내 토지등 매수제도 도입	<신 설>	○효율적인 특정도서 지정·관리, 지역주민 불편해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토지 등 매수규정제도 도입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2 (2004.7)	자연정책과 ☎2110-6737
8	시·도 특정도서 지정제도 도입	<신 설>	○국가이외에도 시·도지사의 특정도서 지정·관리제도 도입 ·도서명칭·위치·면적 등을 고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3 (2004.7)	자연정책과 ☎2110-6737
9	시·군·구에 부상 야생동물구조센터 신설·운영	○부상조수의 구조·치료가 영세한 민간단체에서만 운영	○부상조수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시·군·구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비 지원제도 신설 ·04년도에 10억원 국고지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0조 (2004.7 예정)	자연생태과 ☎2110-6753
10	야생동·식물 보호강화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에 양서·파충류 미포함	○밀렵·밀거래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한 처벌 신설, 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의 종류 지정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양서·파충류의 포획금지 대상 추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한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 신설 ·건축물 등 신축·증축 행위, 토지형질 변경, 하천·호소 등 구조변경, 토석채취에 대한 행위 금지 ○시·도의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제도 신설 ·이용·개발 등 행위시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9조, 제19조, 제27조 (2004.7 예정)	자연생태과 ☎2110-674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생활소음 규제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 ○발파 소음·진동 규제 완화 ○공사장 소음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토록 함 ○발파소음·진동의 경우에는 주간에 한하여 10dB 완화 예) 주거지역(낮) : 70dB 80dB로 완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5dB강화(5년후 시행) 예) 주거지역(낮) : 70dB 65dB로 강화 	<p>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2004.1.1)</p> <p>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2009.1.1)</p>	<p>생활공해과 ☎2110-6814</p>
12	비산먼지관리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간 : 사업시행일 3일전 (변경신고는 변경일 3일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사업장인 경우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에 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과 고철·곡물의 보관업 및 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을 추가함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간을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변경신고는 변경전(사업장의 명칭 및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신고토록 함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변경)서와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사업으로 건축폐기물처리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함)을 추가함.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8조 (2004.1.1)</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2003.12.10)</p>	<p>생활공해과 ☎2110-6812</p>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되는 공동주택내 각종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 물질을 주민입주 전에 측정하여 공고 하도록 함 ○다중이용시설에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오염물질을 설정 하여 이를 준수하고, 연 1회 이상 자가측정하도록 함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오염물질을 다량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고시하여 다중이용 시설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법 시행이 전까지 마련 예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 공기질관리법 (2004.5.30)	생활공해과 ☎2110-6818
14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천연가스사용버스·화물 제작자 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CO : 4.0g/kwH · HC : 0.9g/kwH	○천연가스 사용 버스·청소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산화촉 매장치)부착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 CO : 4.0 → 0.4g/kwH · HC : 0.9 → 0.2g/kwH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 (버스 2004. 1. 1, 청소차2004.7.1)	교통공해과 ☎2110-6799
15	건설기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신설	<신 설>	○건설기계중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 준을 신설하여 장비 제작단계에서 기준 적합여부를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 (2004. 1. 1)	교통공해과 ☎2110-6799
16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시행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 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2004.8.1)	유역제도과 ☎2110-684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톤당 100원	○1톤당 110원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2004.1.1)	유역제도과 ☎2110-6840
18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1톤당 120원	○1톤당 130원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2004.1.1)	유역제도과 ☎2110-6840
19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1톤당 120원	○1톤당 130원	영산강 섬진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30조제1항 (2004.1.1)	유역제도과 ☎2110-6840
20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지침시행	○기타수질오염원인 수산물 양식시 설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 설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양식수조의 20% 이상의 침전시 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 설 설치 등	○시·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 의 승인을 얻어 양식장 수질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 록 함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 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 내지 제51조	산업폐수과 ☎2110-684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1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변경	○6시간	○24시간 균등분배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 설치 · 1일 100톤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 설치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2004.1.1)	생활오수과 ☎2110-6856
22	단독정화조의 한국산업규격 재질기준 시행	-	○단독정화조 한국산업규격(KS) M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등에 관한 재질기준 시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9조의2 (2004.7.1)	생활오수과 ☎2110-6856
23	먹는물 수질기준강화시행	〈신 설〉	○2004년7월부터 과잉소독 방지를 위하여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 도입시행 ·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이하 ·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이하 ·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이하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이하 ·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이하 ○2004년7월부터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해 탁도기준이 0.5NTU에서 0.3NTU(매월 측정된 시료수의 95%이상)로 강화하는 한편, 연속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개별여과지에 탁도측정의무화 ※시설용량이 1일 100,000톤 이상인 정수장에 적용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 등에관한규칙 (2004.7.1)	수도관리과 ☎2110-688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4	먹는샘물·정수기 등 먹는 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 지방이양 등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 리업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업체에 대한 제재수단 미비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과 관 련하여 샘플개발허가 등 34개 사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먹는샘물 수입관 매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를 거부할 있 고, 국내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증명표지 사용 제한가능	먹는물관리법 (2004.7.1예정)	수도관리과 ☎2110-6880
25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TV, 냉장고, 컴퓨터, 타이어 등의 제품과 종이팩·금속캔·유리 병·용기류·플라스틱 포장재 등 에 대하여 재활용의무부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필름류 플라스틱포장재, 형광등을 추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2004.1.1)	자원재활용과 ☎2110-6954
26	분리배출표시제도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대한 재 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표시 제도 도입, 2003.12.31까지 유예	○2004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대하여 분리 배출표시 의무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법률 제14조 (2004.1.1)	자원재활용과 ☎2110-6954
27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신 설〉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2003.9.4) ※ 시·군·구 조례로 제정, 2004.1.1시행 예정	폐기물정책과 ☎2110-6917 ~8

노동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8. 17.부터 고용허가제 시행 -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의무 후 외국인력 채용 -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적립금·귀국보증금 가입 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일 : 2004. 8. 17)	외국인력정책과 ☎2110-7080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 - 매월 1회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20~3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3 (시행일 : 2004.1월)	고용정책과 ☎503-9748
3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월 이전에 조기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공공부문, 5인 미만 제외)으로 근로시간단축 조치 이후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신규채용 - 지원금액 : 단축후 증가인원 분기당 150만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 - 지원기간 : 법정 시행시기까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2 (시행일 : 2004.1월)	고용지원과 ☎507-626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법정근로시간 단축	○ 주 44시간	○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부칙 제1조(2004.7.1~ 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503-9742
5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	○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 연차휴가 1년 만근 10일, 1년 근 속시마다 1일씩 추가 ○ 유급생리휴가 : 월 1일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가산)로 조정, 1년미만 근속 자에게 1월당 1일의 휴가 부여 ○ 생리휴가의 무급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71조 및 부칙 제1조 (2004.7.1~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503-9742
6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시 금 전보상의무 면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및 부칙 제1조(2004.7.1 ~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503-9742
7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1월	○ 3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부칙 제1조(2004.7.1~ 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503-9742
8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조정	○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3조(2004.7.1~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503-9742
9	임금보전	-	○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방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4조(2004.7.1~2011 단계적용)	근로기준과 ☎503-974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인상	○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월 40만원으로 인상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2004.1.1)	여성고용과 ☎502-5441
11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액 인상	○ 직장보육교사 1인당 월 65만원 지원	○ 직장보육교사 1인당 월70만원으로 인상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2004.1.1)	여성고용과 ☎502-5441
12	육아휴직장려금 추가지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후 30일 이상 당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 기존의 장려금에 추가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90일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직후 90일이상 근무한 경우 월10~15만원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2004.1.1)	여성고용과 ☎502-5441
13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일용근로자,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시간제근로자,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국내 파견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 일용근로자,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 근로자 범위 축소 •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1주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 포함)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 • 일용근로자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2004.1.1)	고용보험과 ☎502-6631~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편	<p>○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p> <p>- 55세이상 고령자를 상시근로자의 6%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 15만원 지원</p> <p>○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p> <p>- 구직등록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한 55세 이상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28만원씩 6개월간 지원</p> <p>○ 고령자재고용장려금</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p> <p>- 고용기간이 55세인 고령자를 상시근로자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분기 15만원씩 5년간 지원</p> <p>※ 업종별 지원기준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p>○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p> <p>-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한 50세 이상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p> <p>※ 다만, 중소기업은 12개월간 지원</p> <p>○ <폐 지></p> <p>○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p> <p>- 정년을 57세이상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제외)</p> <p>※ 중소기업은 12개월간 지원</p>	<p>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시행일 : 2004.1월)</p> <p>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시행일 : 2004.1월)</p>	<p>고용정책과 ☎503-9748</p> <p>고용정책과 ☎503-9748</p>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5	고용유지지원금 중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 및 휴업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지원금 : 1일 4시간 이상 휴업 실시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2시간 이상 휴업한 경우에도 지원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7조의4 (시행일 : 2004.1월)	고용지원과 ☎507-6267
16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을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인 자 또는 이직자 ○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거쳐 전직 지원계획 수립 ○ 지원수준 : 1/2(대규모기업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고용조정 · 정년 · 근로계약만으로 이직예정인 자 또는 이직자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수립 ○ 지원수준 : 2/3(대규모기업 1/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2004.1월)	고용지원과 ☎507-6267
17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간 : 1인당 60만원 6개월간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기간 : 1인당 채용후 6개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30만원(총 1년간) - 근로계약기간 1년이하 자 제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 (시행일 : 2004.1월)	고용지원과 ☎507-6267
18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 ○ 3단계 지원 : 3개월 60만원, 3개월 40만원, 6개월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2단계 지원 : 6개월 50만원, 나머지 6개월 20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3(2004.1월)	고용지원과 ☎507-626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9	직업훈련시설비용 대부 한도 인상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2 ④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 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2 ④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2	자격지원과 ☎503-9757
20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사업 도입	○ 제30조의2(수강장려금의 지원등)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 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1에 해당 하는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 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수 있다.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 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학교(각종학교를 제외한다)	○ 제30조의4(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 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부할수 있다.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세미나, 심포지움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 (시행일:2004.1.26)	자격지원과 ☎503-9757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0			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③ 제2항의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0조의4 제2항, 제3항	자격지원과 ☎503-9757
21	작업환경측정대상 확대	○ 옥내작업장 116종	○ 옥내·외 작업장 191종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2004. 1. 1)	산업보건환경과 ☎507-0206 산업보건환경과
22	작업환경측정 횟수 다원화	○ 6월 1회 이상	○ 신규작업장 및 공정변경 작업장 작업개시 30일 이내 실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수준에 따라 - 3월 1회 이상 - 6월 1회 이상 - 1년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2004.1.1)	☎507-0206

건 설 교 통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ABS설치 의무화	○ ABS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대형 위주로 10~20%만 장착	○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하여 바퀴잠김 방지식 주제동장치(ABS)설치 의무화로 안전사고 예방 - '04. 3. 1일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수입분부터 적용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004.3.1)	건설지원 담당관실 ☎504-9159
2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대상공사 확대	○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통보를 함	○ '04.1.1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 공사를 전자 통보하도록 확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4.1.1)	건설경제 담당관실 ☎504-9051
3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공사 확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이상 공공공사,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함	○ '04.1.1부터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공공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 공사, 1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로 확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4.1.1)	건설경제 담당관실 ☎504-9051
4	사업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	○ 승합자동차의 인가·등록, 대폐차, 증차시 3년이내의 차량으로 충당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차량 충당연한을 6년으로 완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28조제5항 (2004.01.26)	운수정책과 ☎504-9147
5	도시철도채권발행이율인하	4.0%	○ 최근 국내·외 금리수준의 지속적인 인하 추세에 따라 지하철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 (4.0→2.5%)	도시철도법 제12조 부산교통공단법 제26조 (2004.01.01)	도시철도과 ☎504-9149
6	전국번호판제도 시행	○ 시·도별로 번호판을 관리함에 따라 주소변경시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 및 변경 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민원발생	○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불필요함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 해소 등 국민편의 증진	자동차등록령 (2004.01.01)	자동차관리과 ☎504-9155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7	자기부담금제 도입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	○ '04.8.21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을 예방 - 대인사고 : 200만원이내 - 대물사고 : 50만원이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4.2.21)	교통안전과 ☎504-9151
8	무보험차량 과태료한도 인상	○ 무보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한 도액이 낮아 실효성이 저하 - 이륜자동차 10만원 - 비사업용차량 30만원	○ '04.8.21부터 과태료한도액을 보험료 수준으로 현실화하 여 보험가입을 유도 - 이륜자동차 20만원 - 비사업용차량 6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2.21)	교통안전과 ☎504-9151
9	가불금제도 개선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청구시 보험사업자 등이 미지급하여도 과태료조항이 없어 보험사업자를 처벌할 수 없었음	○ '04.2.21부터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사업자 등이 가불금 미지급시 과태료를 부과 - 교통사고피해자가 가불금 청구시 보험사업자등은 10일이 내에 지급 - 미지급시 미지급가불금액의 2배가 과태료로 부과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4.2.21)	교통안전과 ☎504-915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	○ 1년 단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단위 장기계획인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수립·시행	주택법 개정 (2003.11.30부터 시행)	주택국 ☎504-9133
	최저주거기준 도입	-	○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한 주택우선 공급, 주택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 시행령에 규정하여 추진	○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도 강화		
	공동주택리모델링 활성화	○ 기준·절차 등 미비	○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 마련 ○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주택사업계획승인제도 강화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계획승인절차 적용에 혼란 야기	○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 ○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단지를 20세대 미만으로 소규모 분할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됨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0	사업승인 등의 권한이양 및 위임	○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 위임	○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 승인권한 일부를 시·도에 이양 - 종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국가·주공·토공의 시행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양대상에서 제외	주택법개정 (2003.11.30부터 시행)	주택국 ☎504-9133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 근거 마련	○ 전국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주택 건설기준에 적용	○ 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행정 실현이 가능		
	감리자 지정권한 시·도에 이양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도지사에게 지정권 위임)	○ 시·도지사가 감리자를 지정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도 포함)		
	총괄감리원의자격 강화	○ 1천세대 이상 : 감리사 이상	○ 1천세대 이상 : 수석감리사 이상		
	총괄감리원 배치기간을 실효성 있게 조정	○ 주택건설공사 전기간에 걸쳐 배치	○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되 감리제외 13개 공사만이 진행되는 기간은 제외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만 사업 승인대상이므로 청약자격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 -	○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적용 ○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주택법 개정중 (2004.3월 시행예정)	주택국 ☎504-9133
12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및 증여가 자유로움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 조합은 주택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중 (2004.1월 시행예정)	주택국 ☎504-9136
13	접도구역안 토지의 매수청구제도 도입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접도구역안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등의 신축·개축·증축 제한	○ 고속도로 매수청구권제 도입으로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 가능 ○ 도로의 관리청은 매수청구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을 청구인에게 통보	도로법 개정 (2004.7월 시행)	도로국 ☎504-907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4	적재량 측정방해행위 벌칙신설	○ 축조작등 고의적인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시에도 일반적인 적재량 측정거부행위로 보아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축조작 등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신설 ※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강화	도로법 개정 (2004.7월 시행)	도로국 ☎504-9071
15	공항운영증명제도 도입	-	○ 공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행정당국의 증명을 받도록 제도 도입 - 전국 16개 공항중 우선 국제선이 취항하는 8개 공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2004년이후 전국공항을 대상으로 확대	항공법 개정 (2003.11.24)	항공정책 심의관실 ☎504-9182

해 양 수 산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어업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 중장기 정책자금은 연리 3%, 2년 거치 5년분할상환	○ 연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대체('04.1.1이후 상환이 도래되는 자금)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제3조 (2004. 1. 1)	수산정책과 ☎ 3148-6814
2	어업인의 재해에 대한 정책보험 실시	〈신 설〉	○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실시	어선원및어선의재해 보상보험법 제1조 (2004. 1. 1)	어업기술인력과 ☎ 3148-6861
3	TBT방오도로 사용 금지	〈신 설〉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TBT를 포함한 방오도로 사용이 전면 금지	유해화학물질관련고시 (2004. 1. 1)	해양환경과 ☎ 3148-6543
4	부산항만공사 설립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산항 운영	○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항을 운영	항만공사법 제4조 (2004. 1월)	항만물류기획과 ☎ 3148-6661
5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어종에 대한 판매장소 지정	〈신 설〉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 어종은 별도로 지정한 판매 장소에서만 판매 ※ TAC어종(12개) : 전갱이, 고등어, 정어리,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갈치, 멸치, 오징어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4 (2004. 1월)	자원관리과 ☎ 3148-6932
6	배합사료 권장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신 설〉	○ 양식장 환경악화의 원인인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관한특별법 (2004. 4월)	양식개발과 ☎ 3148-6962
7	일선수협 제도개선	○ 상임이사제와 전무제중 택일 ○ 조합장선거 자체관리 ○ 수협중앙회감사 및 자체감사	○ 상임이사제 도입 ○ 조합장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 외부감사제 도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2004. 상반기)	수산정책과 ☎ 3148-6812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8	선어회 대량 공급	○ 일식집 위주로 선어회 소비	○ 생산지의 선어회 가공공장에서 대량생산하여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급	수산물품질관리법 (2004. 상반기)	품질위생과 ☎3148-6921
9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기준을 마련	〈신 설〉	○ 해수욕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기준을 정하고 매년 조사 실시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2 (2004. 상반기)	해양환경과 ☎3148-6542
10	국제선박맞항만시설보안규칙 발효	〈신 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 화물선 선박은 국제 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야 운항 가능	선박맞항만시설보안에 관한규정 (2004. 7. 1)	안전정책 담당관실 ☎3148-6315
11	내항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안전 관리체제 강화	○ 500톤 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은 선박안전관리 증서를 소지해야 운항 가능	○ 500톤이상 → 200톤 이상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3조 (2004. 7. 1)	안전정책 담당관실 ☎3148-6315
12	수산질병관리사 도입	〈신 설〉	○ 물고기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수산질병 관리사제 도입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7조 (2004. 8. 1)	양식개발과 ☎3148-6965
13	제2선적제도 도입	○ 선박 등록절차가 국제선박등록법 및 제주선박등록특구제로 이원화	○ 이원화되어 있는 등록절차를 통합	국제선박등록법 개정 (2004. 12월)	해운정책과 ☎3148-6614

문 화 관 광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근거)	○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에 따라 폐지	2004.1	문화정책국 문화정책과 (3704-9415)
2	일본대중문화 개방 대폭 확대	○ 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 전면 개방 ○ 영화, 음반, 게임부문 일부개방	○ 일본 대중문화 개방대상 8개 부문중 기 전면 개방 2개 부문(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부문) 외의 영화, 음반, 게임 부문 전면개방 ○ 양국간 활발한 문화교류로 상호 신뢰구축 및 이해증진에 기여	2004.1	문화정책국 문화정책과 (3704-9412)
3	박물관·미술관 의 등록·관리 업무 이관	○ 문화부가 관장	○ 박물관·미술관의 등록·관리 업무를 시·도로 완전 이관 ○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도모	2004.1	문화정책국 도서관박물관과 (3704-9460)
4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기관 변경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업무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담당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기관을 국립중앙극장으로 신규 지정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정취소(2004.1.1자)	2004.1	예술국 공연예술과 (3704-9533)
5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신규〉	○ 2003년 12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완료 ○ '04.1.1. 통합전산망 공식운영 시작 - 수익구조 투명성제고를 통한 유통비용 축소 및 신속 정확한 산업통계 집계 기대		문화산업국 영상진흥과 (3704-9678)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 월드컵 등을 계기로 한시적용 ('01.1~'03.12)	○ 부가세법시행령(제26조 제1항)을 개정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영세율을 '04.12월까지 연장토록 추진	2003.12	관광국 국민관광과 (3704-9754)
7	관광호텔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 일반용 전력요금 적용 ※ 국제대회계기 특례 적용사례 있음	○ 향후 3년간 관광호텔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특례 시행토록 추진	2003.12	관광국 국민관광과 (3704-9754)
8	유기기구 안정성 검사기관 등록제 실시	○ 검사기관 지정제	○ 일정 요건을 갖춰 문화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 ○ 관련법 개정 - 관광진흥법시행령('03.8), 동법시행규칙('03.10)		관광국 국민관광과 (3704-9758)
9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 강화	○ 2003 전국체전 11종목 107명 대상으로 도핑 검사 처음 실시 〈신규〉	○ 전국체전 등 국내경기대회 도핑 검사 확대 실시 - 전국체육대회 : 35종목 210여명 - 전국소년체전 : 9종목 80~90여명 - 종목별 전국규모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도 점진적으로 확대 ○ 사전 예고 없는 평시 검사(out of competition test) 실시 - 육상·수영·역도·보디빌딩 등 11종목 200명		체육국 체육정책과 (3704-9817)
10	청소년증발급 대상지역 확대	○ 서울시, 대전시, 강원도 등 3개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발급	○ '청소년증' 발급 전국 확대 - 13세~18세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에 의해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 ○ 공공운송시설 등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청소년증을 가지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비학생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학생들은 기 할인혜택)	2004.1	청소년국 청소년정책과 (3704-991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청소년문화존(zone) 지원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소들을 Net-Working하여 상설 청소년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 조성 ○ 자율·참여·분권에 바탕을 둔 문화 복지의 지방분권화 의지 실현 		청소년국 청소년정책과 (3704-9910)
12	문화기관의 여성화장실 비율 확대 및 보육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 산하 7개 문화기관 - 화장실비율 현황 1:0.67 - 1개기관 보육시설 미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화장실 비율 확대 및 화장실내 기저귀 교환대 추가 설치 - 2004년도: 예술의전당 공연장 등 총76개 확충 - 2005년까지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 1대3 비율로 조정하고 ○ 기타 문화공간의 경우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되, 최소한 1대1 이상이 되도록 함 ○ 보육서비스 강화 및 유아휴게실(수유시설) 설치 - 민속박물관 수유시설 설치(2004년) - 새용산박물관 및 국립극장의 경우 설계에 반영, 여성편의 시설 확충 - 정동극장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지방문예회관 등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건립되는 신규 문화시설에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여성편의공간 설치 의무화 포함 		문화행정 혁신위원회 여성문화TF (3704-9985) 기획총괄 담당관실 (3704-9212)

여 성 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 1년 이내인 사업자(대출 신청일 기준) -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	○ 지원대상의 확대 -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 3년 이내 인 사업자 (대출 신청일 기준) -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수료자 ※ 대출재원 : 100억원	여성발전기본법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운용규정』 등	정책2(담) (3703-2545)
2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	<신 규>	○ 저소득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지원 ※ 대출재원 : 30억원	여성발전기본법	정책2(담) (3703-2545)